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34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Fake News Situations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Major OECD Country Cases

김용희/박영주/이혜원/이현주/허엽/양연희/한정훈/윤소민

2023. 12

연구기관 : 오픈루트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오픈루트

총괄책임자: 김용희 연구위원(오픈루트)

참여연구원: 박영주 대표(오픈루트)

이혜원 책임연구원(오픈루트)

이현주 선임연구원(오픈루트)

허엽 이사(바른언론시민행동)

양연희 차장(바른언론시민행동)

한정훈 대표(다이렉트미디어랩)

윤소민 대리(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목 차

| | |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 4 |
| 제 2장 OECD 및 주요 국가의 가짜뉴스 규제 현황 | 5 |
| 제1절 유럽 | 5 |
| 1.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5 |
| 2. 독일 | 23 |
| 3. 프랑스 | 34 |
| 4. 영국 | 48 |
| 5. 이탈리아 | 62 |
| 6. 스페인 | 64 |
| 7. 룩셈부르크 | 67 |
| 8. 노르웨이 | 69 |
| 9. 핀란드 | 70 |
| 10. 그리스 | 72 |
| 11. 헝가리 | 74 |
| 제2절 북남미 | 76 |
| 1. 미국 | 76 |
| 2. 캐나다 | 85 |
| 3. 브라질 | 89 |
| 제3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94 |
| 1. 일본 | 94 |

| | |
|---|-----|
| 2. 호주 | 99 |
| 3. 싱가포르 | 110 |
| 4. 말레이시아 | 115 |
| 제3장 국제기구 동향 | 120 |
| 제1절 UN | 120 |
| 1. 정책 및 제도 | 120 |
| 2. 국제협력 활동: UN 인증 캠페인(United Nations Verified campaign) | 121 |
| 3. 사례 및 대응현황 | 122 |
| 제2절 OECD | 127 |
| 1. 정책 연구 | 127 |
| 2. 국제협력 활동: Dis/Mis Resource Hub | 128 |
| 3. 사례 및 대응현황 | 129 |
| 제3절 UNESCO | 131 |
| 1. 개념 | 131 |
| 2. 국제협력 활동 | 132 |
| 3. 제도 및 대응현황 | 132 |
| 제4장 결 론 | 135 |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35 |
| 1. 주요 국가별 가짜뉴스의 대응 현황 및 제도 비교 | 135 |
| 2. 해외의 가짜뉴스 관리 조직 현황 | 139 |
| 제2절 정책 제언 | 148 |
| 1.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 148 |
| 2. 국제협력 공조 방안 | 162 |
| 참고문헌 | 164 |

표 목 차

| | |
|--|----|
| <표 2-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행동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 13 |
| <표 2-2> 이의제기 절차 …… | 16 |
| <표 2-3> 의무사항 …… | 17 |
| <표 2-4>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의무 …… | 18 |
| <표 2-5> 대상업체 …… | 18 |
| <표 2-6> EU의 가짜뉴스 관련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 21 |
| <표 2-7> 독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26 |
| <표 2-8> 독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 제2조 2항 …… | 27 |
| <표 2-9> 독일 형법상의 위법한 불법정보 유형 주요 내용 …… | 28 |
| <표 2-10>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주요 논의 현황 …… | 32 |
| <표 2-11>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7조 …… | 38 |
| <표 2-12> 「정보조작방지법」 제3호 11조 …… | 42 |
| <표 2-13> 「아비아법」 주요사항 …… | 43 |
| <표 2-14> 프랑스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 47 |
| <표 2-15> 허위정보 구분 …… | 49 |
| <표 2-16> 허위사례와 관련된 형법 …… | 55 |
| <표 2-17>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제6조) …… | 57 |
| <표 2-18> 온라인 피해 유형 …… | 58 |
| <표 2-19> 영국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주요 논의 현황 …… | 61 |
| <표 2-20> 이탈리아의 가짜뉴스 대응 현황 …… | 63 |
| <표 2-21>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 법령 …… | 76 |
| <표 2-22>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 …… | 78 |
| <표 2-23>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 …… | 86 |

| | |
|---|-----|
| <표 2-24> 캐나다 팩트체킹 조직 | 87 |
| <표 2-25>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법안의 6가지 사항 | 91 |
| <표 2-26> 브라질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92 |
| <표 2-27> 심각한 피해(serious harm) 유형 | 100 |
| <표 2-28> 통신미디어청(ACMA) 강화된 권한 | 103 |
| <표 2-29> 호주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106 |
| <표 2-30> 디지털 산업그룹(DIGI) 내 역할 | 108 |
| <표 2-31>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에서 정의하는 공익 위반행위 .. | 112 |
| <표 2-32> 형량 범위 | 113 |
| <표 2-33>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114 |
| <표 2-34> ‘가짜뉴스 방지법’ 형량 범위 | 116 |
| <표 2-35> ‘가짜뉴스 비상법’ 형량 범위 | 117 |
| <표 3-1> UN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무결성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 122 |
| <표 3-2> OECD 허위정보 관련 프레임워크 | 128 |
| <표 3-3> 공공 커뮤니케이션 9대 원칙 | 129 |
| <표 4-1> 주요 국가별 가짜뉴스 규제 현황 | 135 |
| <표 4-2> EU의 대외관계청(EEAS)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 | 140 |
| <표 4-3> EU의 디지털서비스법 및 디지털 시장법 | 141 |
| <표 4-4> 영국의 산하기관 | 143 |
| <표 4-5> 프랑스의 가짜뉴스 관련 기관 | 145 |
| <표 4-6> 호주의 통신미디어청(ACMA) | 146 |
| <표 4-7> 허위조작정보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58 |

그림 목 차

| | |
|---|----|
| [그림 2-1] 가짜뉴스(허위정보): 시즈오카현 태풍 피해 사진 | 97 |
| [그림 2-2]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가짜뉴스 영상 | 98 |

요 약 문

1. 제 목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짜뉴스(fake news)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용어로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등이 있으며, 각각의 의미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짜뉴스는 주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주 나타난다. 허위조작정보는 가짜뉴스보다 넓은 범위의 잘못된 정보를 다루며, 특히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허위정보는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여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대중화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받아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며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국가 및 법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짜뉴스의 의도성, 허위성, 공공의 이익과의 연관성,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 자유와 책임의 균형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 검증 프로그램, 계정 차단, 교육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었으며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가짜뉴스의 형태와 전파 방식이 진화하고 있어 대응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① OECD 및 주요 국가의 가짜뉴스 대응 사례 분석, ② 주요 국제기구의 가짜뉴스 대응 현황 ③ 정책적 건의 및 국제협력 공조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OECD 및 주요 국가 중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 및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국제기구의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대응과 국제 협력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국제 협력 공조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유럽

1)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보고서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생성, 제시 및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정보 또는 오도하는 정보’라고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였다. 이는 허위조작정보로 간주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완전히 ‘가짜’라기 보다는 사실과 조작된 정보를 섞은 것이 포함되고, ‘뉴스’와 유사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행위들(가령, 꾸며낸 자동계정, 가짜 팔로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작된 영상, 타겟 광고, 조직화 된 트롤링, 시각 밈(visual memes) 등)이 포함되는데 ‘가짜뉴스’라는 단어에 그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허위조작정보는 저널리즘 산업과 저널리즘 직업의 변화, 디지털 미디어로의 이동 및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 이해되어야 하며, 많은 시민들이 다수의 공적 기관들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전반적 위기 맥락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5년부터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생산 및 유포를 적극반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러시아, 서발칸반도, 중동 및 아프리카 등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대응하는 태스크포스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의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마련하여 전개하고 있다.

2) 유럽 주요 국가

독일은 ‘가짜뉴스’라는 용어와 구분하여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로 생산된 뉴스 형식을 갖춘 허위보도를 뜻하며, 허위조작정보는 이러한 형식적 측면을 넘어 허위적 내용을 가진 수많은 외형(Erscheinungsform)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대중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만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으로 허위성 또는 오도성이 증명·인정된 각종 형태의 정보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들을 포괄하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거짓정보를 올리는 행위의 영향력은 기존의 법제만으로 규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을 시행하며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총리실 산하의 ‘프랑스 어휘 풍성화를 위한 위원회’는 영어 fake news를 대체하는 용어로 information과 intoxication를 조합한 ‘infox’ 신조어를 제안하며 이를 ‘거짓이거나(mensongère) 의도적으로 속셈을 가지고 있는(délibérément biaisée) 정보(information)’로서 예를 들어 정당에 대한 비호감을 높이거나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과학적으로 확립된 진실을 왜곡하는 데 동원(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가짜뉴스(fake news)와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경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정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법률 혹은 헌법위원회 공식 문서 등을 인용, 참조하는 경우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fausse(s) information(s)’, ‘faussesnouvelles’를 ‘거짓 정보’, ‘가짜 정보’로 지칭하고 있다. 프랑스는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 및 형법, 정보조작방지법 등을 통해 허위정보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권고 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허위정보 생산 및 유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를 전후로 가짜뉴스의 규제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영국 하원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DCMS)’는 2018년 7월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Disinformation and fake news)’의 중간보고서에서 가짜뉴스는 ‘허위정보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좋아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가짜뉴스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표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용어 대신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라는 두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행정부는 영국은 가짜뉴스가 미치는 악영향보다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오히려 무기화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DCMS), 인터넷안전위원회, 오픈컴 등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허위정보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형법, 통신법, 온라인안전법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허위 정보, 오도하는 내용,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뉴스나 이야기를 의미하며 가짜뉴스와 관련된 개념은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8년 3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들이 웹상에서 유포되는 잠재적인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또한 외무부에 국가 및 유럽 간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책과 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을 신설하고 NATO 및 EU 기구와 협력하면서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스페인인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라 가짜뉴스를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대중을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생성, 제시, 전파된 검증 가능하게 거짓이거나 오도하는 정보’로 정의한다. 스페인은 언론매체와 소셜 네트워크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령에 따라 초법적 상설 기구를 설립하여 정부 각료들이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관련 조직으로는 스페인 정보보호국(CNI), 스페인 정보보호국 경찰(CNPIC), 스페인 정보보호국 국립경찰단(CNP)이 있으며 스페인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발 가짜뉴스 대응 캠페인 및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에 대처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룩셈부르크는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가짜뉴스와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EU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 규제안도 정비하고 있다. 뉴스 기관 및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강조하는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가짜뉴스 규제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로 인한 위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가짜뉴스와 싸우는 책임이 개인보다는 미디어와 관련 기관에 더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이니셔티브 조직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법적 조치에 따른 잠재적 침해에 대해 주의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로 비롯된 반이민, 극우 혐오 발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가짜뉴스로 인해 이에 대한 저항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준용함은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허위정보로부터의 회복탄력성이 유럽 41개국 중5회 연속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그리스는 2021년 개정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짜뉴스의 판단기준과 영향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헝가리는 핀란드와 같이 주로 러시아 관련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가짜뉴스 대응법을 발효하여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북남미

미국은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적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라고 해서 가짜뉴스 유통을 그대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미국 방송은 「수정헌법」에 따라 특정한 이유가 아니면 발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에 대한 일부 규제는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욕설, 성적인 내용, 폭력적인 내용 등 사회의 기본가치를 위협하는 내용에 대해 규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광고방송에 대한 규제,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독점금지, 공시의무, 공익방송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방송규제는 독립기관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가 수행한다. 또한, 명예훼손법, 전기통신법, 방송품위강화법, 통신품위유지법 등의 법률과 허위정보 관리위원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모니터링, 팩트 체크 등의 제도를 통해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의 가짜뉴스 규제 개념은 주로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방송법, 선거법, C-18 등을 통해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및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 경쟁청 등의 모니터링과 규제, 팩트체크 조직 등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대신에 허위조작정보, 허위 정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는 개인, 사회 집단, 조직 또는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로 생성된 정보, 허위정보는 현실에 근거한 정보로 개인이나 조직, 국가에 해를 끼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였다.

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일본의 가짜뉴스와 오남용 정보에 대한 규제는 주로 기존의 미디어, 선거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가짜뉴스, 특히 선거 및 재난 중의 잘못된 온라인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특히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을 통해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호주는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및 허위정보(misinformation) 방지’ 초안에서 허위정보(misinformation)는 거짓이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기만적인 정보의 온라인 콘텐츠를 말하며, 기만하려는 의도 없이 공유되더라도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보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고 설명하고 있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과 온라인 안전국 등을 통해 법 규제 체계와 행정기관을 운영하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디지털 산업그룹 등을 통해 민간과 산업계, 정부가 합동으로 가짜뉴스 조치안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짜뉴스를 의견과 비판, 풍자나 패러디가 아닌 허위를 표적으로 삼아 악의적인 행위자가 만들어 낸 고의적인 것으로 온라인에서 퍼지는 허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의 진술로 설명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 온라인 안전코드 등이 발효되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와 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모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2018년 세계 최초로 가짜뉴스 방지법안을 통과시켜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법안이 폐지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비상법이 발효되었다.

라. 국제기구

UN은 오보는 부정확한 정보를 실수로 퍼뜨리는 것을 말하지만, 허위조작 정보(disinformation)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속일 의도가 있으며 심각한 해를 끼치기 위해 퍼뜨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UN은 법제화보다는 가짜뉴스와 오남용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나 자율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허위정보대응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N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정보의 출판을 장려하는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UN인증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0,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60여개국에 배포하였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무결성을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허위정보 대응보고서를 발간하여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OECD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의 실태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허위조작정보’와 ‘허위정보’의 예방 및 적절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11개국 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 Dis/Mis Resource Hub를 운영하고 있다.

UNESCO는 가짜뉴스 용어의 모순을 지적하며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허위정보는 사실은 아니지만 유포하는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는 정보로 설명하고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일 뿐 아니라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마.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국내 온라인 및 미디어의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통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둘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판단과 관련해서 방심위 또는 별도 독립 기구가 독립성 및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입증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확산 억제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자율규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 국제협력 공조 방안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에 대한 국제협력은 EU, UN,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단위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공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짜뉴스의 각 국 대응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공동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등의 문제 상황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 등과 관련하여 실효성 및 적절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가짜뉴스 대응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사업자, 이용자에게 다양한 실천적 요소를 부여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UMMARY

1. Title

An Analysis of Fake News Situations and Countermeasures - Focusing on Major OECD Country Case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widespread use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in the early 2000s has led to a rapid proliferation of fake news. It has grown to be a global concern, particularly in the wake of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need for legal definitions and protocols for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has grown along with its spread and the harm it causes. Programs for information verification, account blocking, and education have been implemented in opposition to fake news, and public awareness campaigns are still going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technology advancements in recent years have resulted in growing kinds of fake news and means of dissemination, necessitating solu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includes three main sections: (1) an analysis of incidents of fake news reaction in the OECD and other key nations; (2) a status report on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onse to fake news; and (3) policy recommendations and action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4. Research Results

Concepts and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key European nation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to counter the spread of fake news. Europe has advised utilizing the phrases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vagueness of the fake news idea.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EU's Digital Service Act, nations have authorized the dissemination of fraudulent material through crimi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lec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r legal definition of "fake news". However, the United States, which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and press, does not view the distribution of fake news as such. Under the First Amendment, broadcasters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required to be accountable for their speech unless there is a specific reason, but some regulations are allowed to protect social and legal interests. Canada is worried that regulations may restrict the right to free speech and concentrates on measures made by th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accuracy and impartiality of information. Instead of using the word "fake news," Brazil uses the terms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To combat false news, the country has presented a measure, but the lower house of Congress did not pass it.

Japan has enhanced the liability of social network operators under the Prohibitor Liability Limitation Act and largely applies existing media, election, and defamation laws to regulate fake news and misleading material. Australia uses administrative agencies like the Office of Online Safety and the Online Safety Act, along with a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o combat false information. With the passage of the Online Safety Code and the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Singapore has toughened the penalties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n 2018, Malaysia enacted the first anti-fake news bill globally, making it illegal to produce and distribute false

information. But the bill was challenged as restricting the right to free speech and expression, and as a result of the growing controversy, it was ultimately repealed.

Fake news is being address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OECD, UNESCO, and the United Nations through campaigns, international alliances, and policy stud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ystem against false news, we suggest the following actions: First, the definition of disinformation should be clear and specific. The legal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dis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clarify the role of the ministry and its subsidiary organizations in responding to disinformation. Second,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and spread of disinformat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disinformation, a defense committee or a separate independent organization may be considered to verify disinformation based on independence, expertise, and transparency. In addition, in the case of suppressing the production and spread of dis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implement and develop self-regulatio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o that platform operators can operate disinformation monitoring systems autonomously.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prepar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on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manipulated information. It can also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polic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monitoring of disinform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self-regulation of operators.

6. Expectation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fake news response by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a fake news response plan based on social consensus by giving various practical elements to governments, businesses, and users and engaging them in order to prepare a response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realities. It is also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reducing social costs caused by fake new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statues of fake news regulation in the OECD and key countries

Chapter 3. The stat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Fake News

Chapter 4. Research Result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짜뉴스(fake news)’라는 개념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용어는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는 뉴스 기사나 보도를 지칭한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사 용어로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서로 유사한 개념을 다루지만, 각각의 의미와 사용 맥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가짜뉴스(fake news)’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짜뉴스’는 종종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정보의 허위성과 그 정보가 뉴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허위조작정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짜뉴스보다는 일반적으로 덜 구체적인 표현이다.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한 오류에서부터 의도적인 거짓 정보까지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허위정보(misinformation)’는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이는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뉴스매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교육과 사회적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가 허위정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고 퍼트리려는 것을 지칭한다. 허위조작정보는 특히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가짜뉴스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이다.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대중화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과거에는 주로 잘못된 정보나 소문을 통해 퍼졌다.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가짜뉴스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적 경향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허위 정보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짜뉴스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국가와 법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오도하는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 정의는 특정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의도성이다. 많은 법률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는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둘째, 허위성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과장이나 주관적 견해와 구분한다. 셋째, 공공의 이익과 질서와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공공의 이익, 안전, 또는 질서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뉴스의 영향을 고려하는 요소다. 넷째, 가짜뉴스의 배포 및 확산에 대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은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책임의 균형 측면에서 많은 법적 정의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특히 민주적 사회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각국의 법적 정의는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접근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짜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정부 기관, 뉴스 조직,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정보 검증 프로그램의 도입,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계정의 차단 또는 제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의 인식 제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에도 가짜뉴스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AI 등 디지털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가짜뉴스의 형태와 전파 방식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해치며, 공공의 의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지속적인 인식 제고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가짜뉴스로 지칭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하고, 특히 OECD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가짜뉴스의 현상과 확산 및 관련 제도 전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정의, 특징,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가짜뉴스 현상을 이해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짜뉴스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국가의 정책, 기술적 대응, 교육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가짜뉴스 대응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주요 국제기구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조사하였다. UN, OECD, UNESCO에서의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제 협력을 위한 활동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건의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제안하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범위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여 정부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장 OECD 및 주요 국가의 가짜뉴스 규제 현황

제 1절 유럽

1.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가. 개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전문가 그룹을 소집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이라는 보고서를 2018년 3월에 발간했다. 보고서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용어를 공식화하는 등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생성, 제시 및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정보 또는 오도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허위정보는 일부 사용자가 그 내용을 사실로 믿는 경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인식이 대중에게 퍼져 파급력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허위조작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콘텐츠는 완전히 ‘가짜’라기 보다는 사실과 조작된 정보를 섞은 것이 포함되고, ‘뉴스’와 유사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행위들(가령, 꾸며낸 자동계정, 가짜 팔로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작된 영상, 타겟 광고, 조직화 된 트롤링, 시각 밈(visual memes)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단어에 그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용어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게다가 허위조작정보는 정보의 생산 자체보다 정보의 유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 유통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디지털 행동인 게시(posting), 댓글달기(commenting), 공유하기(sharing),

트윗하기(tweeting), 리트윗하기(re-tweeting)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이를 포괄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과 해당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보도를 묵살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해왔고, 그 결과로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힘 있는 자들이 독립적인 뉴스 미디어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뉴스의 유통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허위정보의 확산, 이른바 반-EU 태도가 적지 않게 확산했고, 유럽연합은 이것이 유럽연합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특정 행위자가 유포하는 허위정보는 특정 국가의 정치 및 정보 환경을 침투, 관통하는 예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정치 사회적 구조를 약화 시킨다고 언급한다. 대중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정파적인 정치토론과 질 낮은 저널리즘을 통칭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 보고서에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허위조작정보가 발생시키는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아울러 지칭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대안으로 제시한 ‘허위조작정보’는 이미 불법인 표현 형태(대표적으로 명예훼손, 혐오표현, 폭력선동)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악을 끼치는 표현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는 행위자(국가와 같은 정치 행위자, 회사와 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자, 시민 개개인 혹은 시민단체 행위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뉴스 미디어, 플랫폼, 기저에 깔린 네트워크,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통해 유통되고 증폭되는 구조(infrastructures of circulation and amplification)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보 생산, 정보 유통,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관여하는지를 포괄하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는 저널리즘 산업과 저널리즘 직업의 변화, 디지털

미디어로의 이동 및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 이해되어야 하며, 많은 시민들이 다수의 공적 기관들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전반적 위기 맥락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 제도

1) 구성

유럽연합(EU)은 이미 예전부터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차원에서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전반에 지속가능하고, 탄력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략팀을 설립하였다. 유럽 대외 관계청 산하에는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접근을 위해 허위정보 관련 커뮤니케이션 부서(Communication Division),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등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조직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 및 공공외교(Communication Policy and Public Diplomacy Division) 부서가 있다. 즉, EU의 외교, 안보 및 국방 정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 관련 부서와 대표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EU의 외교 대상인 다양한 청중과의 효과적 소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 Division) 부서이다. 이 부서를 통해 EU는 현지성에 근거한 맥락을 바탕으로 허위정보에 취약한 근린 지역과 소통하여 현지 사회와 협력하며 전문성을 갖고자 했다.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일곱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허위정보,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역외 행위자들이 활용하는 기술, 기술 및 절차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 EU의 상황 인식 수준을 강화하는데 일조한다. 둘째, EU의 민주주의, 안보 및 정책 이행에 미치는 외국의 허위정보, 정보 조작 및 간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략 및 수단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셋째,

사회전반에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넷째, 독립 언론 및 미디어 리더러시 혹은 팩트 체크를 통한 인식 제고,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민사회의 권한 부여 및 지원 활동을 통해 허위정보, 정보 조작 및 간섭 공격에 대한 유럽연합 유관 조직의 탄력성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섯째, EU의 민간 임무와 운영 및 EU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언어 및 전문 지식을 현지적 맥락에서 사용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섯째, 역외 허위정보,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처하는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의 정부, 미디어 및 시민사회의 협력을 공고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동맹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관련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대응을 위한 노력도 주요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는 대외관계청이 조직하고 있는 위 두 개의 커뮤니케이션 부서 중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만이 허위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전문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하위부서로 정책, 전략 및 글로벌 우선 이슈 팀(The Policy, Strategy and Global Priority Issues Team, PSG)을 두고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정책 및 전략 개발을 담당한다. 태스크포스팀은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 및 대응을 위한 동부 스트랫컴 태스크포스팀(East StratCom Task Force), EU의 회원 가입 신청국과 잠재적 후보국이 다수 포진해 있는 서(西)발칸 반도 지역을 담당하는 서부발칸반도 태스크포스팀(Western Balkans Task Force), 동시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담당하는 남부 태스크포스팀(The Task Force South)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이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커뮤니케이션 조치 및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실제적 정보를 EU와 회원국에게 제공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 EU 대표단 및 공공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의 교육 및 독립적인 언론 활동, 조직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태스크 포스 팀들을 통해 여타 EU 기관 및 회원국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G7 및 NATO와 같은 국제 사회와의 공조, 다양한 시민 단체, 언론 집단 및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런 목적하에, 서(西) 발칸 지역에 다원적 정보 환경을 수립하기 위해 동 지역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EU의 남부 근린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 태스크포스는 EU 대표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예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캠페인을 설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허위정보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무엇보다 건강한 정보 및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¹⁾

이밖에도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EU 및 국제파트너와의 협력을 조정하고 있는데 EU(유럽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RAS)²⁾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허위정보와 관련해서 이슈 팀(PSG)은 신흥 국외 행위자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의 활동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슈 팀(PSG)은 EU(유럽연합)의 근린 지역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공동 안보 방위 조약과 EU(유럽연합) 대표부에게 허위정보와 정보조작 그리고 방해 전략이 미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1) 정세원, 이무성(2022)참고.

2) 2018년 12월 유럽 이사회가 승인한 허위 정보 방지 실행계획 중 하나인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RAS)은 2019년 3월부터 설립 운영 중이다. 본 시스템을 통해 EU 회원국에게 퍼진 허위정보와 관련된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하여 캠페인과 같은 대응을 조율하고, 동시에 오픈소스 정보를 기반으로 학계, 관계기관, 온라인 플랫폼 및 국제파트너의 협력을 통해 대응체계 마련을 하고 있다.

2) 제도의 전개

2015년 3월 유럽이사회는 EU 기관 및 회원국과 협력하여 전략적 의사소통에 관한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허위정보를 포함한 해외 정보조작 및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 스트랫컴 태스크포스(East StratCom Task Force)’를 출범³⁾했다. 특히 러시아가 진행 중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다루기 위해 유럽대의 행동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의 유럽연합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European Union for Foreign Affairs)인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의 지휘 하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 동부 파트너십 국가(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조지아, 몰도바 공화국 및 우크라이나)의 일반적인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언론자유를 촉진하며, 러시아 연방의 허위정보를 적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한다.⁴⁾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이 태스크포스팀에는 EU 기관에서 채용하거나 EU 회원국에서 파견한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정규 팀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러시아어를 포함한 EU 이웃 국가의 언어를 일부 구사하고 있는 ‘EU vs Disinfo’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허위정보에 관련한 고서, 기사기록 및 분석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집행위원회는 허위정보에 관한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자문(public consultation)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8일에 발표한 논평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주요 미디어에서 나토(NATO)와 서구를 적으로 왜곡하여 묘사한 것에 대해 허위정보라고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2020년 2월~3월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가장 신뢰받는 국제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동부 스트랫컴 태스크포스는

3) https://www.eeas.europa.eu/eeas/questions-and-answers-about-east-stratcom-task-force_en#11232

4)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2116/-questions-and-answers-about-the-east>

시민의 대다수(60%)가 신뢰하는 유일한 국제기관으로 나타났다.

동부 태스크포스는 주요하게 다음의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는 예방적 차원의 의사소통 및 인식 제고이며, 둘째는 독립 매체에 대한 지원이며, 마지막으로 위협적 행위자와 그들의 활동에 대한 탐지, 분석 및 이의제기이다.

특히 EU 기관, 회원국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부 파트너십 국가 및 그 외 지역의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정보 동향을 보고 및 분석한다. 이를 통해 허위정보 내러티브를 설명 및 폭로하며, 정보 분석가, 언론인 및 공무원 등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여 동부 지역의 정보공간 및 그 너머에 전파되는 허위정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말부터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인 HighLevel Experts Group(HLEG)을 조직하였다. 관련 학계, 시민사회, 언론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매체에서 허위정보의 확산과 관련한 이슈와 사회 및 정치적 과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HLEG는 2018년 3월, 유럽연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적절한 대응을 고려한 ‘허위정보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018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상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콘셉트와 자율규제수단’을 채택하며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계획 및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규제 수단으로써 허위정보에 대한 유럽연합의 행동강령 실행, 팩트체크를 위한 독립적인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양질의 저널리즘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 등이 있다.

먼저,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⁵⁾」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신홍 및 전문 플랫폼, 광고 산업 종사자, 사실 확인 기관,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 조직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서명한 자는 허위정보

5) https://ceas.europa.eu/sites/ceas/files/aktionsplan_gegen_desinformation.pdf

유포를 금지,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보장,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 사실 확인 기관과의 협력 강화,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가진다. 이와 같은 실행을 위해 2018년 12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및 역외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2018년 12월 제출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및 트위터는 2018년 10월 자발적으로 행동강령에 서명하고 의무를 실행한다. 실천계획에서는 ‘허위정보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보고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단 하나의 해결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행동 목표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의 출처 및 해당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고, 지원되고, 파생되고, 무엇을 향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여론조작의 시도를 밝혀낼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과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그리고 정보생산자와 배포자의 관계를 균형 맞추기 위한 지원을 통해 정보의 다양성을 촉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정보의 추적 가능성 및 영향력 있는 정보 제공자의 입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에는 공공기관, 온라인 플랫폼 회사, 언론인, 미디어 집단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정치광고의 투명성 보장부터 허위계정폐쇄 그리고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익무효화(demonetization) 전략

6) 2018년 말까지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모질라(Mozilla) 등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실천 강령에 서명 함. 2022년 6월 발표된 강화된 실천 강령에 대해서는 3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광고 관련 단체, 팩트체크 관련 단체, 언론 관련 단체, 연구조직 등 다양한 유형의 단체가 실천 강령 준수에 서명하고 자율규제 환경에 참여함. 2023년 5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TikTok), 비메오(Vimeo), 어도비(Adobe),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 RSF), 유럽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 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Communication Agencies, EACA), 세계 광고주 연맹(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 WFA), 과학 피드백(ScienceFeedback) 등 38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

등이 이뤄져야 하는 등 다섯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의무를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 2-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행동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1.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특정 계정 및 웹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중단하고 광고주에게 적절한 보안장비 및 정보를 제공
2. 정치 광고 및 정치 이슈 기반 광고의 투명성 확보
3.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가상계정 폐쇄
4. 소비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다른 뉴스 매체 접근 강화
 - 1) 허위정보에 대한 판단을 돕는 수단이나 사실에 입각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가 명시된 ‘공익적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5.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연구단체 강화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년 5월 ‘강화된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 지침’ 발표 이후 2022년 6월에는 ‘2022 강화된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강화된 행동강령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참여자 맞춤형 약정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 형태 및 향후 제공될 서비스 형태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맞춤형 약정에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행동강령⁷⁾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정보 제공자가 광고수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서명자는 허위정보 옆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배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정치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명자들에게 투명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후원자, 광고 지출 및 표시 기간을 공개하도록 약속함으로써 사용자가 정치 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되는 행위(가짜 계정, 봇 기반 증폭, 사칭, 악의적인 답

7) European Commission(2022), The Strengthened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도 허위정보를 인식 및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허위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정보 연구를 위해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 및 제공,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모든 EU 회원국 및 언어로 확대하고 플랫폼이 서비스에 대해 사실 확인을 보다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령을 검토하고, 기존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허위정보를 처리하거나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둘째,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 사용자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려면 온라인에서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의 규제에 있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진다. 1)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는 보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창출하고, 2) EU 단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등한 경쟁의 장을 확립하는 것이다.

3) EU 공동 규제 수단: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뿐 아니라 연구자의 데이터 액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 중 하나다.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으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은 국가의 경제적, 기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의 성장에 따라 온라인상의 여러 문제가 과생되었고, 관련 기업들의 독과점으로부터 과생된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유럽 국가들의 관련 법안의 대체 방안으로써 시행되었다. 2020년 12월 15일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했는데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민·상법 원칙을 적용한다. 2022년 11월 16일 공식 채택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여러 위험 중에서도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과 맥락이 유사하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2000년에 도입된 ‘EU 전자상거래 지침’의 상당 부분을 계승하고 있으나, 개정내용에 온라인 플랫폼 현상이 가져온 변화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하였다. 또한 회원국에 입법의 통일화를 가능하게 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일종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 법안이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잘 보호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의무를 준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에서의 역할, 위상 등에 따라 차별화된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의 방대해진 디지털 콘텐츠를 AI추천 알고리즘은 세세하게 검열하지 못하였고, 이는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의 유해 콘텐츠 확산을 야기했다.

또한 사용자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또한 마케팅 수단으로써 의도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극대화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서 도입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만 제기 절차를 갖추고, 플랫폼은 이를 검토 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삭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절차 또한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 한다.

<표 2-2> 이의제기 절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정보의 삭제·차단에 관한 것 :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 구축, Trusted Flagger 신고사건의 우선 처리, 범죄 의심정보 신고의무 등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 : 독립적인 외부감사, 콘텐츠 조정 보고서 공개, 불법정보 조치 활동결과보고, 광고 알고리즘 등 공개, 광고내용 등 보관 및 공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등 공개, 위험평가 보고서 공개, 감사보고서 공개 등 •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 : 위험평가 의무화, 이용약관에 제한사항 명시, 준법감시인 지정, 자체 불만처리 시스템 운영, 불법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처리기준 공개, 판매원 확인·제공 의무,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 협력, 코디네이터에 대한 불만신고 등 • 법 집행을 위한 것 : 단일 연락창구 개설, 법률대리인 지정, 약속의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의 전환, 긴급명령, 조사권 등, 제재규정 등 |
|---|

출처: European Commission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적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보다는 플랫폼의 준(準)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공공적 책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서비스유형 및 사업자 규모)에 따라 의무를 차별화하고 하고 있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⁸⁾ 등의 순으로 의무가 추가되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반면,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⁹⁾ 서비스 제공자의 법 준수능력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여된다.

8)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 중 EU시장 내에서 4천 5백만명(EU인구의 약 10%) 이상의 월평균 유효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제25조제1항). 이 경우 월평균 유효 서비스 이용자의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유럽위원회가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와 협의한 후 위임입법으로 정한다(제25조제3항).

9)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①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②독립적 감사 실시, ③준법감시인 지정·신고, ④추천 시스템의 매개변수명확화, ⑤추가적인 온라인 광고 투명화 조치, ⑥규제당국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 ⑦ 추가적인 투명성보고서 발간 의무가 적용된다.

<표 2-3> 의무사항

| 대상 | 내용 |
|--|---|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 | (제10조)관계당국 등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일 연락창구를 개설 |
| | (제11조)회원국에 설립되지 않은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대리인을 지정 |
| | (제12조)중개서비스이용시 부과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 |
| | (제13조)불법 콘텐츠로 간주되거나, 약관에 위배되는 정보의 삭제·차단과 관련하여 투명성보고서(콘텐츠 조정 보고서)를 발간·공표할 의무 |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제14조)(일반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더하여) 제3자가 불법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 |
| | (제15조)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삭제·차단하기로 결정 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 온라인 플랫폼 | (제17조)(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더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체 불만처리 시스템을 운영 |
| | (제18조)분쟁해결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님 |
| | (제19조)‘지정신고자(Trusted Flagger)’의 신고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님 |
| | (제20조)불법 콘텐츠를 반복해서 게시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함 |
| | (제21조)생명·안전과 관련된 범죄 의심정보 발견 시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 |
| | (제22조)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판매자의 신원이 부정확한 경우 플랫폼 서비스제공을 거절·중단 해야 함 |
| | (제23조)불법정보 등의 삭제·차단과 관련한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의무 |
| (제24조)광고를 노출시킬 이용자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매개변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제공 해야 함 | |

출처: European Commission.

이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신고시스템 구축, 판매자 신원 확인 및 검증 의무, 불만처리 시스템 및 ADR 절차 도입,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준법감시인 지정, 감사 시행, 투명성 보고서 발간, 추천·광고 알고리즘 공개 등의 의무에서부터 전 세계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 또는 일일 평균 매출액의 5%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2-4>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의무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에 더하여) 플랫폼 서비스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연 1회 이상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하고(제26조), 식별된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27조), 연 1회 이상 법 준수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제28조). 또한, 추천 시스템에 이용되는 주요 매개변수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하며(제29조), 1년 이상 광고주, 광고내용 등의 정보를 보관해 두었다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제30조). 특히, 관계당국 등과 관계당국이 선정한 연구자들이 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고 구조적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제31조), 준법감시인을 지정해야 하며(제32조), 콘텐츠 조정 보고서 이외에 위험도 평가결과, 감사보고서, 감사이행보고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제33조).

출처: European Commission.

또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다양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적용되는데, 법에 따른 온라인 중개 서비스업체들의 의무사항은 해당 기업의 역할, 규모 및 온라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체는 다음과 같다.

<표 2-5> 대상업체

-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도메인 이름 등록 대행 업체
- 클라우드 컴퓨팅 및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를 포함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
- EU 역내 4억5천만 소비자들의 1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해당 기업들은 대규모 고객 기반만큼 온라인상에서의 유해 콘텐츠 보급과 사회적 유해성에 있어 특히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적용 대상에 포함함.
- 온라인 중개 서비스, 앱스토어, 협력 경제 플랫폼, 소셜미디어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온라인 플랫폼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연합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형 플랫폼을 발표¹⁰⁾하고, 지정된 대형 플랫폼은 EU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대형 플랫폼 17개(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부킹닷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지도,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백과, 유튜브, 잘란도)와 초대형 검색엔진 2개(구글 검색, 마이크로소프트 Bing)가 리스트에 올랐다.

반복 위반 시에는 EU 내 영업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중소 규모 플랫폼의 경우 각 회원국에서 감독하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s)을 통해 EU와 협력을 이어간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에서 문제가 됐던 원산지 원칙을 넘어 EU 역내 단일 법령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은 EU 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환경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기업들의 기회를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콘텐츠는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클수록 수반되는 책임도 크다.” 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의 콘텐츠 조정 결정을 투명하게 내려야 하며, 위험한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방지해야 한다.”며 “우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가 사회와 시민들에게 야기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해당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¹¹⁾했다.

10) Europäische Kommission, 2023.4.2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de/ip_23_2413

11) https://www.ecas.europa.eu/delegations/south-korea_ko?s=179

4)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함께 디지털시장법(DMA)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가(gatekeeper)가 존재하는 구조로 EU 역내의 공정한 시장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통일된 규칙(regulation) 제정과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성(fairness)과 경합성(contestability)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시장법(DMA)은 구체적으로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상태를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들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contestable), 플랫폼 이용자(플랫폼 사업이용자(Business user)와 최종사용자(end user)들에게도 플랫폼 산업의 과실이 공정한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검토’에서도 중개사업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유럽 디지털 시장에서는 1)극소수의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거래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2)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교류를 통제하는 관문(gateway)으로 역할을 하는 한편, 3)플랫폼 서비스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경쟁법과 같은 기존 수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디지털시장법(DMA)은 시장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독점을 금지하는 EU 기능조약(TFEU) 제102조¹²⁾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다만, 게이트키퍼가 반드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능조약 제102조가 적용될 수 없는

12) 유럽연합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조항인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2조 제a호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한(unfair) 구매 또는 판매가격을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문: “directly or indirectly imposing unfair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other unfair trading conditions”)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규율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법과 달리 게이트키퍼에 한정해 그들의 행위가 초래하는 효과와 상관없이 시장을 경합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플랫폼 이용자가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시장법(DMA)의 입법목적은 경제적 불균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및 그 부정적인 결과, 예를 들어 플랫폼에 의해 벌어지는 경쟁력 저하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은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법률(regulation)로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지침 등과 같이 각국이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일관된 조치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EU 시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 효력을 가진다.

<표 2-6> EU의 가짜뉴스 관련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연도 | 내용 |
|---------|--|
| 2015.03 | 동부 스트랫컴 태스크포스 출범 |
| 2018.04 | 「인터넷상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콘셉트와 자율규제수단」 채택 |
| 2018.12 |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실행계획」 발표 |
| 2019.03 |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RAS) 승인 |
| 2021.05 | 「강화된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 지침」 발표 |
| 2022.06 | 「2022 강화된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 발표 |
| 2022.11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DSA)」 공식 채택 |
| 2023.04 | EU의 직접적인 감독받는 대형 플랫폼 대상 발표 |

다. 사례 및 대응현황

EU(유럽연합)는 디지털 환경을 그들의 가치에 맞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곧 그들의 미래전략이자 비전으로서 EU 시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유럽의 주요과제로 설정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여러 개의 정책 이니셔티브(policy initiatives)를 개발하였다. EU의 주요 정책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실행 강령(code of practice) 구축, 팩트체크 수행을 위한 조직 구축,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지침 개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EU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구 개발 등을 통해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조직적 대응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테러리스트와 폭력적인 콘텐츠, 혐오 발언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X의 불법 콘텐츠 유포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해 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에 대한 공식적인 침해 소송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EU 내 불법 콘텐츠 유포를 중심으로 특히 위험 평가 및 완화와 관련되어 X가 택한 조치와 DSA가 의무화한 EU 내 불법 콘텐츠에 대한 통지 및 조치 등을 고려하여 EU에서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X가 노력했는지, 2)플랫폼에서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효율성과 3)X가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제40조에 따라 연구원들이 X의 데이터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는지, 4)사용자에 대한 기만적이고 고의적으로 의심되는 문구들과 특히 특정 구독제품에 연결된 광고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공식 절차를 보고했다. 관련하여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공식 절차를 종료하기 위한 법적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심층 조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해당 회사가 위원회에 협력하는 정도, 변호권 행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하며, X의 철저한 조사를 언급했다.

2. 독일

가. 개념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Falsch meldungen(잘못된 뉴스)’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조사를 잘못해서 퍼트린 잘못된 뉴스’, ‘의도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뉴스를 퍼트리는 거짓 뉴스’라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Fake News’(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2월 <가짜뉴스, 정의와 법적 근거(Fake-News, Definition und Rechtslage)>라는 연구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를 언급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하거나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었는데, 목적은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표를 조작하여 대중에게 특정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상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기도 하고,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자는 허구적인 이야기로 특정 페이지에 유인되거나, 게재된 광고를 통해 돈을 벌게 하는 클릭베이트(clickbaiting)과 같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가짜뉴스’라는 용어와 구분하여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로 생산된 뉴스 형식을 갖춘 허위보도를 뜻하며, 허위조작정보는 이러한 형식적 측면을 넘어 허위적 내용을 가진 수많은 외형(Erscheinungsform)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이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기만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으로 허위성 또는 오도성이 증명·인정된 각종 형태의 정보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들을 포괄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나. 제도

독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독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만으로 사회관계망에 거짓정보를 올리는 행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의견이 득세했다. 독일 정부에서도 사회관계망에서 타인을 혐오 공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포되는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했고,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상, 종교, 인종, 출신 성별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오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위태로워진다는 경각심을 느꼈다.

2015년 9월 독일연방 법무부 장관이었던 하이코마스는 인터넷에서 증오 발언의 확산 방지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회사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과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인터넷에서의 불법적인 혐오표현처리, Umgang mit rechtswidrigen Hassbotschaften im Internet)을 구성했다. 이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의 대표자들은 자신의 기업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 이용자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고된 콘텐츠는 위법한지 판별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두어 24시간 안에 독일법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하며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콘텐츠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기관의 조사에서 유튜브에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90%가 삭제되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39%, 트위터에서는 고작 1%만이 삭제되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항의에도 여전히 느리고, 부실하게 처리된다는 결과¹³⁾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기업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위법한 콘텐츠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독일 정부에서는 자율적 방식을 넘어 정부 개입에 따른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사회관계망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네트워크 집행법)을 독일연방의회의 의결(2017년 6월 30일)을 거쳐, 2017년 10월 1일부터 발효하고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1월부터 적용 및 시행하게 된다.

1)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네트워크 집행법 1조에 따른 대상 플랫폼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임의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로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 하나(제1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넷(제2조·제3조·제5조·제6조), 의무를 어기면 질서 위반금으로 제재한다는 조항 하나(제4조),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경과규정 하나(제6조)로 총 6개의 조문으로 짜여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데에 있는데,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제기된 항의를 처리하고(제3조),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며(제2조),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할(제5조) 의무를 지우고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서 위반금으로 제재하겠다는(제4조)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특히 네트워크 집행법은 독일 내에서 200만 이상 등록된 이용자를 확보한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는

13) BT-Drs. 18/12727, S. 1 f.; BMJV, Löschung von strafbaren Hasskommentaren durch soziale Netzwerke weiterhin nicht ausreichend, 2017. 3. 14.

‘공인된 규제된 자율규제기관(anerkannte 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에
위법한 게시물에 관한 판단을 위임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제2문).

<표 2-7> 독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조문 | | 주요내용 | |
|-----|---------|---|-----------------|
| 제2조 | 제1항 제1문 | 보고의무로서 보고서 미작성, 불완전한 작성, 적시 미공개 | 최고 5백만 유로 |
| 제3조 | 제1항 제1문 | 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불만처리기관이나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해당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마련 | |
| | 제1항 제2문 |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불만의 전달을 위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항상 이용 가능한 절차를 이용자에게 미제공 | |
| | 제4항 제1문 | 불만 처리 감독 소홀 | |
| | 제4항 제2문 | 조직상의 미비점 미개선 | |
| | 제4항 제3문 | 교육 및 지원 미제공 | |
| 제5조 | 제2항 제1문 | 국내의 송달대리인 미지명 | 최고 50만 유로 |
| | 제2항 제2문 | 수취권자로서 정보 요청에 불응 | |

출처: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2017)

한편, 제2조에 따른 보고 작성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항의를 100건 이상 받은 경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제1항에서 다루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100건 넘게 항의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위법한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반년마다 독일어로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늦어도 반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연방관보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때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보고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제1항), 이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9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2항).

<표 2-8> 독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 제2조 2항

| |
|---|
| <p>제2조 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플랫폼에서 범죄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게 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②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항의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의 설명 및 위법한 콘텐츠의 삭제 및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 ③ 이의제기를 한 기관과 이용자의 이의제기 사유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 기간 중에 제기된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수 ④ 이의제기를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인적 구성, 전문지식, 언어능력 및 항의의 처리를 담당하는 인원의 교육 및 관리 ⑤ 특정 협회의 회원인지의 여부. 회원인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 이의제기 처리부서 및 구성원 여부 ⑥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을 구한 이의제기의 건수 ⑦ 보고기간 중에 항의를 받아 삭제 또는 차단된 콘텐츠의 수(이의제기한 기관 및 이용자, 이의제기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 제3조 제2항 제3호 a)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 및 제3조 제2항 제3호 b)에서 정한 인정된 자율규제기관에 전달되었는지도 기준으로 하여 분류) ⑧ 사회관계망에서 이의제기가 제기된 때부터 위법한 콘텐츠가 삭제 또는 차단된 때까지 소요된 시간, 이의제기한 기관 및 사용자, 이의제기 사유 및 소요시간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주일 초과를 기준으로 분류) ⑨ 이의제기 된 콘텐츠 처리에 관하여 결정한 내용을 이의제기한 사람 및 이의제기 된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내용 |
|---|

출처: 박희영(2018), 독일의 가짜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서의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제4조 제1항) 이는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최대 500만 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4조 제2항).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준수를 감독하는 관할 기관은 연방 법무부이며(제4조 제4항), 이 규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률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집행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게시물’의 경우 가짜뉴스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모의, 테러·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혐오선동, 모욕, 명예훼손, 나치 찬양, 홀로코스트 부정 등 독일 형법상의 불법 정보 유형 21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2-9> 독일 형법상의 위법한 불법정보 유형 주요 내용

| 조문 | 주요내용 |
|--------|--|
| 제86조 | 위헌조직 선전물 배포 |
| 제86a조 | 위헌조직 표시 사용 |
| 제89a조 |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테러)행위의 예비 |
| 제91조 |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테러)행위의 조장 |
| 제100a조 | 간접목적의 위조 |
| 제111조 | 공연한 범죄 선동 |
| 제126조 | 범죄 위협에 의한 공공평온 교란 |
| 제129조 | 범죄단체의 조직 |
| 제129a조 | 테러단체의 조직 |
| 제129b조 | 외국에서 범죄단체와 테러단체의 조직 |
| 제130조 | 국민선동 |
| 제131조 | 폭력물 반포 |
| 제140조 | 범죄의 대가 지급 및 찬양 |
| 제166조 |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에 대한 모욕 |
| 제184d조 | 방송 또는 전자정보를 통한 음란물의 제공(아동 음란물의 배포, 취득, 소유) |
| 제185조 | 모욕 |
| 제186조 | 악의적 비방 |
| 제187조 | 명예훼손 |
| 제201a조 | 사진촬영을 가장한 사생활 영역의 침해 |
| 제241조 | 협박 |
| 제269조 | 증거가치 있는 정보의 조작 행위 |

출처: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2017)

결과적으로 2020년 9월 9일 발간한 ‘네트워크 집행법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평가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Evaluierung d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소셜 네트워크가 범죄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개선되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잉 차단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¹⁴⁾

네트워크 집행법은 발효 이후 두 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제1차는 2021년 4월 3일 발효된 ‘극우주의 및 증오범죄 대응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Rechtsextremismus und der Hasskriminalität)’ 안에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포함하도록 네트워크 집행법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심각한 중범죄를 독일연방범죄수사국(BKA)에 신고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업체는 콘텐츠와 콘텐츠 작성자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마지막 로그인 IP 포함)를 연방 수사국에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연방범죄수사국은 가해자를 식별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할 지방검찰에 전달해야 한다. 제2차는 2021년 6월 28일에 발효된 이 법은 더욱 강화된 규제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새로운 항의 절차(Gegenvorstellungsverfahren)로 제3b조가 추가 도입되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신고하였으나 삭제되지 않은 경우, 게시한 콘텐츠가 삭제 당한 경우 모두 2주 안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이용자를 위해 쉬운 항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3b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

독일정부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용자의 권리 강화가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했고, 분쟁 해결을 위해 독일에 기반을 둔 플랫폼의 경우 공식 중재위원회 설립하여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신고 절차의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네트워크 집행법은 입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이 법률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살펴보면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가 된 후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14) BMJV, Evaluierungsbericht zum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vorgelegt, 9. September 2020 https://www.bmjv.de/SharedDocs/Artikel/DE/2020/090920_Evaluierungsbericht_NetzDG.html

부과되는 높은 벌금 처분이나 혹은 형사처벌의 위협 등은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들이 정당한 내용에 대해서도 과도한 삭제나 차단 등 소위 과잉 차단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행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밖에도 ‘명백히 위법한 게시물’이라고 언급한 표현에 어떠한 게시글이 명백히 위법한 것인지 그 불법성의 기준 및 불법성 입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자의적으로 삭제 권한 이행을 하여 합법적 게시물이라도 삭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울러 형법상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규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혐오 표현이든, 허위조작정보이든 그 내용이 상기한 위법행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가 부여되다 보니 오히려 학계에서는 네트워크집행법은 혐오 표현을 주된 규제대상으로 하며 허위조작정보에의 대응에서는 그 적용 가능성과 효과가 낮다는 의견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집행법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된 4년 동안 우려했던 과잉 차단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

독일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막기 위하여 많은 입법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는 규제대상의 확대와 관련 감독기관의 사무 및 권한 확대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뿐, 다양하고 강력한 처벌 및 제재를 핵심으로 한 자율규제의 ‘강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평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DSA)이 제정됨에 따라 독일도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다.

2023년 12월 연방정부에서 통과된 미디어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 DDG)¹⁵⁾초안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법

15) 미디어서비스법(DDG)은 2024년 2월 17일 폐기 예정인 네트워크 집행법을 대체하며 독일내 DSA 시행을 보완한다.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 범위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판단 근거 및 지배력 남용 행위, 데이터 제공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의무를 부과한다.¹⁶⁾ 연방 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이 중앙기관으로서 독일 내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DSA)을 담당하고 청소년 보호 분야는 연방 아동 청소년 미디어 보호센터 Bundeszentrale für Kinder- und Jugendmedienschutz, BzKJ), 데이터 보호 분야는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위원회(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BfDI)가 관할할 예정이다.¹⁷⁾

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독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허위조작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타인을 모욕한 때에는 「모욕죄」가,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전파할 때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독일에서는 인터넷상 폭력이나 혐오표현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모욕이나 비방 등의 표현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이나 인터넷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독일 형법상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그리고 모욕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 「모욕죄(제185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186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제187조)」 등으로 형사처벌 된다. 다음으로 국민의 평온을 교란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국가, 민족, 종교집단, 인종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0조의 「국민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제1항). 또한 나치 시대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벌일

16) <https://www.heise.de/news/Plattform-Regulierung-Deutsches-Digitale-Dienste-Gesetz-soll-NetzDG-ersetzen-8982385.html>

17) <https://bmdv.bund.de/SharedDocs/DE/Pressemitteilungen/2023/120-wissing-digitale-dienste-gesetz.html>

아닌 것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할 경우(제3항),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고 정당화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시킬 때에도(제4항) 「국민선동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선거 시기에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사상과 이념의 대립과 같이 허위조작정보가 대규모로 확산 될 수 있으나, 다만 이에 대해 「국민선동죄」가 인정되려면 허위조작정보가 질적,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국민의 평온을 교란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

<표 2-10>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주요 논의 현황

| 연도 | 내용 |
|---------|--|
| 2015.09 | 인터넷에서의 불법적인 혐오표현처리 데스크 포스팀 운영 |
| 2018.01 |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시행 |
| 2021.04 |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1차 수정 → 극우주의 및 증오범죄 대응법 |
| 2021.06 |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2차 수정 → 새로운 항의절차 도입 |
| 2023.07 | 독일의 「미디어서비스법(Digital-Dienste-Gesetz)」 제정 中 |

다. 사례 및 대응 현황

독일 법무부는 2019년 1월 ‘라인네카블로그’라는 인터넷 매체에 벌금 1만2000유로(약 1,600만원)를 선고했다. 블로그에 올라온 ‘만하임서 대규모 테러 공격 발생 사망 136명, 부상 237명’ 기사 때문이었다. 주목을 끌려고 제목에 [단독] 문구를 넣고, 피 묻은 옷 사진 등을 첨부했다. 한껏 자극적 내용을 넣은 전형적인 가짜뉴스 해당했다. 매체는 “실제 테러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저널리즘의 한 형태”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7월 네트워크집행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행 태만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약 28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¹⁸⁾했다. 당시 페이스북이

18) Tagesspiegel, 2021.9.3, <https://www.presseportal.de/pm/2790/5010339>

유튜브와 트위터 등과 비교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신고 건수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으로 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2021년 7월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에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300만 유로(약 42억 6,000만 원)의 추가 벌금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독일 정부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페이스북의 신고 절차가 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대변인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연방 법무부와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500만 유로(약 71억 원)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독일 법무부는 2021년과 2022년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텔레그램이 법적 게시물에 대한 불만 제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텔레그램 메신저에 두 차례에 걸쳐 512만 유로(약 72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¹⁹⁾ 텔레그램 측은 텔레그램은 SNS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적인 메신저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른 유튜브 채널의 불법콘텐츠 신고 건수는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 기준 총 233,440건(사용자신고 158,914건, 기관신고 74,526건)으로 보고되었다. 불법콘텐츠를 삭제한 규모는 같은 기간 32,150건(사용자신고 23,644건, 기관신고 8,506건)이다. 가짜뉴스와 관련이 있는 항목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신고 건수는 34,513건, 삭제 건수는 5,0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Änderung der Pressemitteilung vom 2. März 2023: Bundesamt für Justiz hält Bußgeldbescheide in Höhe von 5,125 Millionen Euro gegen das soziale Netzwerk Telegram aufrecht>, Bundesjustizamt, 2023.4.3. <https://www.bundesjustizamt.de/DE/ServiceGSB/Presse/Pressemitteilungen/2023/20230302.html?nn=39384>

3. 프랑스

가. 개념

프랑스의 경우, 오래전부터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앞장서서 대응방안을 모색한 국가 중 하나다. 1881년 7월 29일 법률과 제27조나 선거법 법률조항 제97조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정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²⁰⁾ 그렇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가짜뉴스를 지칭하는 표현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유달리 강한 프랑스에서 영어 fake news를 프랑스어인 fausse nouvelle로 번역해야 하는지 일찍부터 제기²¹⁾되었다. 법률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짜뉴스(fausse nouvelle)”의 명칭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fausses nouvelles’, ‘fausse(s) information(s)’의 표현은 거짓된 정보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고의성, 조작, 해를 끼치는 목적 등의 수식어를 활용해 오늘날 합의된 의미로서 ‘허위정보(désinformation)’로 한정 짓고 있다. 정보조작방지법에서도 허위정보(fausse information)로 정의하고 있지만,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허위정보’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였다. ‘허위정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허위정보’에 관한 개념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 이익’, ‘공공질서 수호’ 등 법률에 포함된 여러 개념들이 부정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상·하원의원들은

20) Cloé Fonteix, Diffusion de « fake news » dans un contexte électoral : propositions de loi, Dalloz Actualité, Mars 2018, p.13.

21) ‘가짜뉴스’로서 ‘fake news’라는 영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형태인 ‘fausses nouvelles’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허위정보를 지칭하기 위해 ‘가짜뉴스(fake news)’라는 표현이 초기부터 사용된 까닭에 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개인, 사회단체, 조직, 국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짓된 정보’(Unesco, n.d.)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허위정보(désinformation)’라는 표현의 사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허위정보’와 관련한 개념 정의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첫째, 허위성 판별에 앞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익에 관한 토론과 연관된 정보’라는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이로 인해 범죄 및 처벌의 합법성의 원칙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개념이 부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투명성 의무 역시 1789년 인권선언 제4조가 보장하는 비즈니스 수행의 자유에 대해 위헌적인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이 선거 기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익에 관한 토론과 연관된 정보’ 역시 선거 운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및 처벌의 합법성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허위정보’ 개념의 모호성이다. 이 법안을 반대했던 상·하원의원들은 패러디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도 혹은 잘못된 의견이 허위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방송의 경우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정보나 실수, 추측까지 허위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의도성을 갖는 허위정보와 패러디나 잘못된 의견과 같이 고의성이 없는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위원회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허위정보’의 불명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객관적인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패러디,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 단순 과장과 같은 정보는 허위정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인위적으로 혹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으로, 고의로 유포되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허위정보’의 기소와 처벌의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정보의 공개성, 정보 생산과 유포의 고의성·인위성·대량성,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허위정보’의 개념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총리실 산하의 ‘프랑스 어휘 풍성화를 위한 위원회’는 영어 fake news²²⁾를 대체하는 말로 information과 intoxication를 조합한 ‘infox’라는 신조어를 고안하였다. 동 위원회는 infox를 ‘거짓이거나(mensongère) 의도적으로 속셈을 가지고 있는(délibérément biaisée) 정보(information)’로서 예를 들어 정당에 대한 비호감을 높이거나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과학적으로 확립된 진실을 왜곡하는 데 동원(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 가짜뉴스는 ‘거짓 또는 고의적으로 편향된’ 정보로 정의되며, 예를 들어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개인이나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확립된 과학적 진실에 반박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fake news란 용어가 지금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이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허위 정보(소식, 뉴스)라는 표현과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조작방지법」에서 허위정보(fausse information)가 소셜 미디어가 일상화된 21세기 이후에 회자되는 가짜뉴스 혹은 가짜뉴스 개념이 기존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직도 가짜뉴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허위정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하되, 법률 혹은 헌법위원회 공식 문서 등을 인용, 참조하는 경우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fausse(s) information(s)’, ‘faussesnouvelles’를 ‘거짓 정보’, ‘가짜 정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나. 제도

프랑스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통의 폐해는 특히 정치적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물론 프랑스는 이전부터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부정선거 운동이나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률을

22) 콜린스 사전(Collins Dictionary)은 가짜 뉴스를 "뉴스 보도를 가장하여 유포되는 거짓되고 종종 선정적인 정보"로 정의한다.

23) https://bnf.libguides.com/presse_medias/fake_news_infox#s-lg-box-14742284

통해 가능했지만, 사후적인 처벌 조항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프랑스는 허위정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 정보조작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본 연구에서는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부터 2018년 「정보조작 근절에 관한 법률」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1)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²⁴⁾

프랑스는 언론에 관한 법률을 오래전부터 제정한 나라 중 하나다. 1849년 제2공화국 시기에 언론을 다루는 최초의 법으로 언론법(*La loi du 27 juillet 1849 sur la presse*)이 제정되었다. 이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은 수십 차례 개정되면서 약 140여 년간 언론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의 역사도 전술한 언론법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1849년에 제정된 언론법 제4조에서는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짜뉴스(*nouvelles fausses*)를 악의적으로 퍼뜨리거나 재생산하는 행위²⁵⁾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를 이어받은 1881년 제정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1881년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짜뉴스 유포죄(*Le délit de diffusion de fausse nouvelle*)’를 정의하면서, 공공의 평화에 대한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란 문구를 공공의 평화에 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이란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24)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25) *La publication ou la reproduction faite de mauvaise fois de nouvelles fausses de nature à troubler la paix publique*

<표 2-11>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7조

악의로 공공의 평화를 혼란스럽게 했거나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가짜 뉴스 (nouvelles fausses) 또는 제3자가 조작, 위조 또는 허위로 귀속시킨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출판, 배포 또는 복제하는 행위는 4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일한 행위가 악의로 이루어져 군의 규율이나 사기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전투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3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이 적용되고 처벌을 받기 위해선 정보의 허위성은 물론 고의성 혹은 악의성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허위정보를 출판, 게재하여야 한다. 즉, 그것이 종이 형태이든, 동영상 형태이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 게재된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허위정보는 정확하고 정황적인 사실(un fait précis et circonstancié)에 기반해 그 거짓과 허위, 오류, 부정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의 평화,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적인 주체나 그 이익을 해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을 뜻한다. 넷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고의성은 해당 허위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것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과장하여 보도하는 경우 허위정보로 처벌을 한 판례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판례를 통해 이 법 조항은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적용되는 법이며, 최근의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허위정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은 그 생산자 개인을 식별하기도 어렵고, 빠르게 대량 유포된다는 점에서 유통에 관련된 모두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언론사 혹은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여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규제 조항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개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선거법, 형법 등 기타 관련 법령

프랑스 실정법에서 허위정보의 유포는 일찍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허위정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선거법(Code électoral), 형법(Code pénal),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위한 2004년 6월 21일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선거법 제L97조(Code électoral Article L97, 1964)는 “거짓 뉴스, 중상모략 또는 기타 사기 책략을 통해 투표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한 명 이상의 유권자로 하여금 기권을 결정하게 하는 경우 1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²⁶⁾”라고 명시하며 허위정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 그 이유는 허위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투표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실제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법 제322-14조(Code pénal Article 322-14, 1994)에서도 ‘사람들에 대해 파괴, 손상 또는 위협의 악화를 믿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공표,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였다면 2년의 징역형과 30,000유로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해가 발생하고 응급구조의 불필요한 개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공표, 전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2000년 9월 19일 오르도낭스에 따라 형법 제322-14조가 개정된 이 조항은 사람에게 대한 파괴, 손상, 악화 등을 믿도록 하는 허위정보나 재해나 응급구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는 허위정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법 제411-10조(Code pénal Article 411-10, 1994)는 ‘외국 세력, 외국 기업, 단체 또는 외국의 통제하에 있는 외국 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실수를 유인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26) Ceux qui, à l'aide de fausses nouvelles, bruits calomnieux ou autres manoeuvres frauduleuses, auront surpris ou détourné des suffrages, déterminé un ou plusieurs électeurs à s'abstenir de voter, seront punis d'un emprisonnement d'un an et d'une amende de 15 000 euros.

7년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의 벌금으로 처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허위정보 제공의 주체가 외국의 세력으로 한정되어 있다.

3) 2018년 「정보조작방지법」이 규제하는 허위정보

위와 같이 프랑스의 법률 시스템에는 직간접적으로 허위정보를 다루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그 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입증하기에는 제한적이거나 어려움 등이 따른다. 그 사이 프랑스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권의 규제에 대한 입법적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17년 프랑스 대선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웹사이트인 RT(Russia Today)와 Sputnik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물론 시리아사태, 유럽난민 사태 등 여러 사항에서 프랑스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주는 각종 가짜뉴스를 유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극우 유럽정파의 각종 가짜뉴스의 SNS를 통한 유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및 위협성에 대한 우려는 2018년 정보조작근절(La loi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정보조작방지법」에 관한 법률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선거법 개정을 위한 조항, 둘째, 방송법 수정을 위한 조항, 셋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다루는 조항, 넷째, 미디어 교육에 관해 교육법을 개정하는 조항, 다섯째, 해외영토에서 법률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새로운 법률이 그 자체로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법률 개정이 기존의 관련 법률을 수정,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조작 방지에 관한 법률 역시 그 자체로 새로운 내용을 담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된 기존의 법률(선거법, 방송법, 교육법 등)에 일부 문구나 내용을 추가, 삭제하는 조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2018년 「정보조작방지법」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호 선거법 개정을 위한 조항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비법 제L111-7조에서 정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익과 관련된 정보나 토론과 관련해 투명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익적 정보 혹은 토론에 관련된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신원, 상호, 회사 소재지, 사업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광고비가 100유로를 넘어선 경우 광고비도 공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징역 1년과 75,000유로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선거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가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제소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의 유포 금지 여부와 같은 조치에 대해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둘째, ‘방송법’이라 불리는 제2호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Loi n°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개정을 통해 시청각최고위원회(CSA)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를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정보가 유포된다고 판단되면 방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내에서 방송을 허가받은 외국의 방송 사업자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관리와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및 정보교육 강화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셋째, 제3호 허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 의무에서는 선거법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선거 이외의 기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협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선거의 진정성을 해치는 허위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2-12> 「정보조작방지법」제3호 11조

1. 알고리즘의 투명성
2. 언론사 및 방송사가 제공한 콘텐츠 홍보
3. 허위 정보를 대규모로 유포하는 계정에 대한 대응
4. 이용자에게 공익적 토론에 대한 콘텐츠 게재 대가를 지불하는 개인의 정보 및 법인의 상호, 소재지,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
5. 이용자에게 콘텐츠의 성격, 출처, 배포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6. 미디어 및 정보 교육

이러한 활동 내용을 담은 선언문은 매년 작성하여 시청각최고위원회(CSA)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 제4호 미디어 및 정보 교육에 관한 조항에서는 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교육에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제5호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에서는 프랑스 본토와 세부적인 법, 제도의 적용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프랑스 해외영토에 대한 법조항 수정을 다루고 있다.

대선을 치르면서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주체, 방식을 결정하는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18년 상원은 두 차례나 법안을 부결시켰다. 최종적으로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 주도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왔다. 또, 일부 상원의원들은 프랑스가 2018년 당시 유일하게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허위정보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조항을 만드는 상황이 프랑스를 ‘리더’로 만들기보다는 ‘고립’시킬 것으로 생각했고 국내법 차원에 앞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4) 아비아(Avia)법

2018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혐오 발언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2019년 3월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의 대변인 래티시아 아비아(Lactitia Avia) 의원은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모델로 한 ‘인터넷에서의 혐오 콘텐츠 규제 법안(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이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 일명 「아비아법」을 발의했다.

<표 2-13> 「아비아법」 주요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의무 : SNS, 검색엔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지 24시간 이내에 ‘명백한(manifestly)’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 처벌.2) 명백한 불법 콘텐츠의 범위 :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이러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적 모욕, 홀로코스트 부인, 성폭력 등 포함3) 테러 미화·선동 콘텐츠나 아동음란물은 행정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함4)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 법인은 125만 유로 이하의 벌금 |
|---|

하지만 야당의 거센 공세 속에 발의안은 상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9년 5월 16일, 해당 발의안에 대해 국사원(Conseil d’Etat)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아비아 법안은 2019년 7월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올라갔으나,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상원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2019년 8월 21일, 프랑스 정부는 해당 발의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에도 통지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2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법²⁷⁾과의 충돌을 염려하며 해당 발의안에 대해 투표하지 말 것을 프랑스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8일, 상원과 하원의 큰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결국, 상원과 하원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하원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2020년 5월 13일, 최종적으로 의원 발의안은 하원에서 찬성 355표, 반대 150표, 기권 47표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18일, 공화당(Le^s Républicains) 상원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2020년 6월 18일,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 표현과 소통의 자유 남용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소통의 자유와 공공 치안 유지라는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결정²⁸⁾이었다. 프랑스 현재는 「아비아법」의 해당 조항들이 프랑스 헌법상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²⁹⁾한다고 판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백한 불법 콘텐츠 24시간 이내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1)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명백한 불법 콘텐츠로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업자가 내리는 점, 2)명백한 불법 콘텐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3)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불법성 판단의

27) 해당 발의안의 적용 범위가 2000년 유럽 연합 지침을 비롯한 유럽 인권 헌장과 관련한 유럽법의 적용 범위와 겹친다고 표명했다. 이어 현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유럽 내 하나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위한 입법 준비 안인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도 각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규제 분야가 같다고 설명했다.

28)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20/2020801DC.htm>

29)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의 제11조를 언급했다. 즉,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의 교환은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므로 모든 시민은 법에 명시된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며, 출판할 수 있다.

어려움과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신고의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4시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 4)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5)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사업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의 불법성과 상관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았다. 또한, 테러 콘텐츠 또는 아동음란물 1시간 이내 삭제 조항에 대해서 1)테러 콘텐츠인지 아동음란물인지가 콘텐츠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행정당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 2)사업자가 1시간이 경과 한 후에 삭제 요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1시간 기간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점, 3)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전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는 점, 4)사업자가 행정기관의 삭제요청을 주어진 시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해지는 1년의 금고형과 250,000유로의 벌금 등의 형량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불법적인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리(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는 국제 인권 기준의 일부이다. 오히려 정보매개자가 사전검열이나 일반적 감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비아법」은 행정기관이나 사인의 신고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는 면에서 본연의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게시물의 존재만 인지했을 뿐 그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면에서 정보매개자의 사전 검열을 강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점 또한 인터넷상의 규제가 가져올 표현과 소통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며, 이와같은 과도한 규제는 자기 검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찬성과 의원들은 인터넷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마저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또한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티클19는 「아비아법」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한다고 하면서, 플랫폼과 불법 콘텐츠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법원의 판단이 배제된 사적 검열을 강화하고, 24시간 이내라는 삭제 기한이 너무 짧고, 처벌이 과도하여 콘텐츠의 과잉 삭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해 왔다.

결과적으로 「아비아법」에 대해 프랑스 내부에서도 혐오 콘텐츠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검열 권한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아법」은 인터넷상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한편으로는 표현과 소통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5) 민간 기관 주도의 팩트체크

허위정보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된 페이스북과 구글은 프랑스의 유수 언론사³⁰⁾들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fact-check)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 규제 적용 사례 및 대응현황

「정보조작방지법」이 제정된 후 선거기간 동안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제소가 이루어진 사례는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가 유일하다.³¹⁾ 허위정보 재판을 전담하는 파리법원에서도 법률이 발효된 이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허위정보 관련 소송과 재판이 많이 밀려들 것을 대비하기도 했지만, 2019년 유럽의회 선거, 2020년 지방선거 모두 실제 제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의 존재, 허위정보의 문제와 인식에 대한 공론화,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정보 생산과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허위정보의 제소, 허위정보로 적발되어 정보가 삭제되거나 유통이 중단되는

30) 일간지인 르 몽드(Le Monde), 리베라시옹(Libération), 렉스프레스(L'Express), 뱅미닛뜨(20 Minutes), 통신사 아에프페(AFP), 뉴스 전문채널인 베에프엠-떼베(BFM-TV), 프랑스 공영방송사 프랑스 텔레비죤(France Télévisions), 프랑스 해외방송법인 프랑스 미디어 몽드(France Médias Monde)

31) 본 보고서 20페이지의 ‘정보조작대처법 적용사례’ 내용 참고

판결과는 별개로 「정보조작방지법」 제11조는 매월 500만 명 이상의 접속자수를 기록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포함한 선언문을 시청각최고위원회(CS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총 16개 업체³²⁾이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자료 제출에 앞서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정보조작방지법」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15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을 위한 권고사항과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언문을 평가한 보고서를 2020년 7월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신고 과정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이용자가 신고 이후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보의 알고리즘 처리,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허위정보 전담 인력이나 채용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가 보고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2020년 4월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위키페디아, 구글 등과는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는 등 온라인상의 허위정보 생산 및 유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표 2-14> 프랑스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연도 | 내용 |
|---------|------------------------|
| 2018.12 | 「정보조작방지법」 시행 |
| 2019.03 | 「아비아법」 국회 발의 |
| 2020.06 | 프랑스 헌법재판소 「아비아법」 위헌 결정 |
| 2021.07 | 비지넘(VIGINUM) 기관설립 |

32) 구글(Google), 데일리모션(Dailymotion), 독티시모(Doctissimo), 링크딘(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 Bing, 버라이즌(Verizon), 스냅챗(Snapchat), 야후(Yahoo), 오페미낭(Aufeminin), 웨비디아(Webedia), 위키페디아(Wikipédia), 유니파이(Unify),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4. 영국

가. 개념

2016년 영국에서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이라는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12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수집 및 정보유통 등에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가 개입하였다는 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가짜뉴스의 개념은 영국 가디언지가 처음 언급하면서 법적 관점에서보다는 언론 또는 뉴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정의 내리고 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대중의 관심 확보, 광고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조작된(manipulated), 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³³⁾’로 온라인을 통하여 빠르게 전달되며, 대중의 관심 확보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된 가짜뉴스는 기존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와 달리 언론사 뉴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된 거짓 정보, 허위 기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독자의 관심과 광고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성도 없이 유포되었다. 따라서, 영국의회에서 가짜뉴스를 정의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지만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와 혼재되어 사용되었고, 그 범위 확정이 쉽지 않아,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2017년 영국 하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 규제필요성, 규제 외 간접적 통제방안”에 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념 정의에 관한 학제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33) 원문은 다음과 같다. “fake news is completely made up, manipulated to resemble credible journalism and attract maximum attention and, with it, advertising revenue”,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The Guardian, 2016년 12월 17일자.

영국 하원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DCMS)’는 2018년 7월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Disinformation and fake news)’의 중간보고서에서 가짜뉴스(fake news)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허위정보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좋아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가짜뉴스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표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a variety of meanings, including a description of any statement that is not liked or agreed with by the reader)’라고 정의한다.³⁴⁾ 따라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해당 뉴스를 읽거나 보는 독자들의 선호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폐기하고 대신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라는 두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가짜뉴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의 개념을 ‘날조정보, 조작정보, 사칭정보, 오도정보, 허위맥락정보, 풍자와 패러디(Fabricated, Manipulated, Imposter, Misleading, False context of connection, Satire and parody)’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면서 각 내용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2-15> 허위정보 구분

| 구분 | 내용 |
|--|---|
| 조작된 내용 (Fabricated & Manipulated cont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헤드라인을 내세워 왜곡한 정보 → 선정적, 낚시성 기사제목 |
| 출처를 사칭한 내용 (Imposter cont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도가 높은 특정 언론사 및 기관 등의 발표를 사칭한 정보 → 언론사 브랜드 이용 |

34)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terim Report Contents”,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House of Commons (2018)

| 구분 | 내용 |
|---|---|
|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 (Misleading cont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관계자 멘트를 진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오해를 심어 주는 정보 → 논평을 사실인 것처럼 제안 |
| 잘못된 연결고리 (False context of conne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헤드라인을 내세우는 등 연결고리가 잘못된 정보 |
| 풍자와 패러디 (Satire and parod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머를 품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독자를 속이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 |

출처: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terim Report Contents(2018)

영국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규제와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부터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2019년에 발간된 하원의 최종보고서에서 허위정보(disinformation)는 ‘정치적·개인적·경제적인 해악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오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제작·유포한 정보’³⁵⁾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작된 정보는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혹은 조작된 정보를 일부러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허위정보는 의도치 않았으나, 부주의(inadvertent)에 의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제목도 독자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위정보(disinformation 또는 misinformation)’를 제안하고 있다.

나. 제도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짜뉴스에 관한 제도가 다수 제기되었으나, 2017년 1월, 영국 하원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위원회(DCMS)가 주도하여 “가짜뉴스 조사단”이 조직된 것이 대표적이다. 영국 하원의 장인 콜린스 위원장은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인하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5)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Final Report”, Eighth Report of Session 2017-19,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House of Commons(2019), at 7-10.

정부 또는 의회 차원에서 직접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디지털날인의무화법 제정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가짜뉴스 범위는 정치적 쟁점뿐만이 아니었다. 2017년, 14세 소녀인 몰리 러셀(Molly Russell)이 소셜 미디어에서 제작·유포되는 정보를 접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도 메시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 기술인 마이크로 타겟 메시징(특정 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자주 노출 시키는 방식, micro-targeting messaging)에 의해 허위정보에 한 번 노출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보에 더욱 노출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집단 따돌림(cyber bullying), 극단주의적 성향의 표현, 여성·아동 등에 대한 '폭력적 목적의 표현 등이 의도된 거짓정보와 함께 유포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논의가 전개되었다. 2018년 1월, 영국 총리실에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응 전담팀'을 창설한다고 밝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2018년 11월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Grand Committee)를 개최하여 24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관련 대응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한편,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영국언론표준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이하 IPSO)를 구성, 허위정보를 판별하고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도 2019년 영국 DCMS위원회는 '온라인 피해보고서(Online Harm White Paper)'를 제출한 후, 온라인 피해 방지법을 발효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영국의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논의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1)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

영국 행정부는 영국은 가짜뉴스가 미치는 악영향보다는 오히려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무기화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제부처를 통해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 조직 관리하고 있는데,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DCMS)를 중심으로

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UKCIS), 방송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선거 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등이 있다. 여기서 인터넷안전위원회(UKCIS)는 가짜뉴스의 영향이 민주주의의 위험(the risk of democracy)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온라인상의 피해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유해성이 있는 경우를 줄이고, 피해자를 돕고 대응하는 독립규제 기구이다.

오프콤(Ofcom)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기관으로 가짜뉴스 규제에 있어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 등을 침해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국민 보호하고, 방송법상 규제의 위임 가능성 및 규제체계(독립규제위원회)의 정립 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나 노년층의 경우, 디지털로 전파되는 개인정보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전파되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정부는 수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언론표준기구(IPSO)를 설립하여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Editor's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여 '정확성, 프라이버시 침해, 기밀정보 누설, 차별정보'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면 규정에 적합한지 심의한다. 규제 범위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지상파 언론매체, 신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영국언론표준기구(IPSO)는 법적으로 언론매체가 아닌 다른 곳의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영국의 지역신문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영국 언론사인 뉴스미디어협회(News Media Association)의 후원을 받아 'Fighting Fake News'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한 영국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인 Full Fact는 Ipsos MOFI 이슈목록에서 영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집계되고 있는 건강과 범죄, 교육, 법, 이민 등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³⁶⁾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 팩트체크 기관을 활용하여 각종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표기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언론사들도 캠페인 등을 통해 규제를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규제 없이 소셜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해 왔던 영국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통제’ 방향으로 소셜 미디어 규제 방향을 보여주었다.

2) 허위정보와 관련된 형법 : 「악의적 소통금지법」, 「통신법127조」

영국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 가해자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리고 2013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으로 명예훼손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는데 상대방이 유포한 허위 사실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명성 혹은 재산상의 손상)가 초래되어야만 명예훼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욕죄도 영국에는 없기 때문에 모욕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국에는 「악의적 소통금지법」, 「괴롭힘 방지법」, 「공공질서법」, 「범죄 정의 및 법정법」 등 인터넷 규제법으로서 온라인상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극히 공격적이거나 허위정보(허위의 정보로서, 유포자가 허위라고 알고 있었거나 허위라고 알려진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악의적 소통 금지법(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³⁷⁾의 원래 목적은 ‘인쇄물에 의한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표현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최대 2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이 법에 의해 처벌되기 위해서는 1)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초래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2)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송하는 메시지가 음란 혹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 혹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36) 국방, 외교, 과학, 환경 분야는 팩트체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8/27>

하며, 3)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혹은 인터넷 토론방에 게시된 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온라인상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 127조」³⁸⁾이 적용될 수 있을지 볼 수 있다. 「통신법 127조」에 의하면, 개인이 외설적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소셜 미디어 등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한 경우, 통신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된다. 이는 공공 통신망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법 127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악의적 소통금지법」과는 달리 악의적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격이나 공포 및 불안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극도로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 혹은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도 처벌 가능하다. 물론 허위정보일 경우에는 귀찮음, 불편, 혹은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대방이 이 허위정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통신법 127조」는 적용 범위가 넓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극도로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 있다.

38) https://wiki.openrightsgroup.org/wiki/Communications_Act_2003/Section_127

<표 2-16> 허위사례와 관련된 형법

- 악의적소통금지법
1조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편지 등을 보내는 범죄) 심리적 고통 혹은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음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협적, 혹은 허위라고 인지하는 정보를 편지 혹은 전자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 통신법 127조 조항
공공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극도로(grossly) 공격적이거나 음란 혹은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 그리고 귀찮음·불편·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단계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영국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3) 디지털날인의무화법

2016년 허위정보유포가 영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자 전자서명법의 범위를 보다 확대·적용하고자 “전자인식, 식별 확인 신뢰 서비스 규율체계”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허위정보에 대한 실명제 도입 방안으로 하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디지털날인의무화법’은 유럽의회 지침에서 논의된 이후, 2000년 제정되었으며, 2002년 개정된 전자통신법에 의해서만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이유로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은 도입되지 못했다.

4)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

2019년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DCMS)는 2017-2019년 동안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그 조사의 초점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영국 내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로 확대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CMS 위원회는 친브렉시트 캠페인의 타깃 광고 활동 관련자들을 의회로 소환해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 약 20회의 청문회가 열렸으며

61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3,500여 건의 질의가 이뤄졌다. 또 이와 별개로 150건이 넘는 서면 질의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미국 조사 당국과의 공조하에 워싱턴 D.C.에서 현장 조사도 펼쳤다. 그 결과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최종보고서에는 “조사기간 동안 페이스북은 해외 관할 구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확인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페이스북이 회사 운영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앞으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그 플랫폼이 사용되는 방식에 책임을 지도록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이번 의회 조사 결과 현재까지 영국에서 소셜 미디어 관련 규제는 거의, 아니,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규제 당국이 데이터 조작,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가 급증하는 문제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온라인피해보고서(Online Harm White Paper)>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피해의 유형은 “이용자(특히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국가안보 또는 사회적 정의·책임·연대 등에 해를 끼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로 정의된다.

<온라인피해보고서(Online Harm White Paper)>에 온라인안전법의 규제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규제기관은 유해 한 내용이 온라인에 게시·유포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기준 정립과 같이 온라인 정보를 차단하지 못한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제재(경영자 책임, 과징금 부과 등)를 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 감시기구 설립 및 안전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매년 유해 콘텐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은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플랫폼 내용에 대한 검색체계(알고리즘 등)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넷째,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독립규제자는 독립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자여야 한다. 다섯째,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이용자가 감시체계 및 기능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적법한 시간 내에 응답한다. 여섯째,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온라인에서 중대한 위해(국가안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위협 등)가 우려되는 경우 불법 정보의 유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안은 이들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일정한 콘텐츠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내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유해한(legal but harmful) ‘유해 콘텐츠’로부터도 아동 및 성인 이용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있다. 법안 제3부 제2장 ‘이용자 간의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 주의의무를, 제3장은 ‘검색 서비스’에서 서비스제공자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행정상 제재(heavy fine)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주의의무는 ‘이용자 보호 및 유해 활동에 대한 온라인 기업의 적절한 보호 의무’로 정의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벌금 부과, 2)온라인 접근 차단, 3)(잠재적으로) 기업 고위직에 대한 책임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표 2-17>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제6조)

| 구분 | 내용 |
|----------|--|
| 필수 주의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콘텐츠 위험 평가의무(제8조) 불법콘텐츠 관련 안전 의무(제9조) • 콘텐츠 보고의무(제17조) 이의제기 절차 의무(제18조) 등 |
| 추가적 주의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 아동 위험 평가의무(제10조), 아동보호 안전의무(제11조) • 대규모 이용자 간 서비스인 경우 : 성인 위험 평가의무(제12조) 성인 보호 안전의무 (제13조) 등 |

출처: Online Harm White Paper(2019)

추가적 주의의무 사항인 ‘아동 위험 평가의무’의 경우 아동 위험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 아동 유해 콘텐츠가 식별된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오프콤(OFCOM)에 보고하는 의무가 포함(제10조)된다. 이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타 아동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아동보호 안전의무는 위험 평가로 식별된 유해 콘텐츠의 위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치 및 연령인증 방식 등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 밖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시 오프콤(OFCOM)이 부과하는 최대 벌금액은 1,800만 파운드(약 289억) 또는 최근 회계 기간의 적격 전 세계 수익(worldwide revenue)의 10%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제118조, 부칙12). 또한 오프콤(OFCOM)의 정보요구고지(information notice)에 있어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에 의한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제92조, 제96조). 추가로 해당 기관의 고위관리자 역시 허위정보 제출 등 해당 기관의 범죄 행위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93조). 온라인 피해의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는데 1)온라인 피해에 해당하는 내용, 2)온라인 피해에 해당 가능한 내용, 3)미성년자에게 노출이 금지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8> 온라인 피해 유형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피해에 해당하는 내용 | 명확하게 온라인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테러, 이민, 범죄, 현대판 노예, 극단적 포르노, 중오범죄, 불법상품판매(마약류 등), 폭력성을 조장하는 내용” 등 포함 |
| 온라인 피해에 해당 가능한 내용 | 덜 명확하지만, 온라인 피해에 해당 가능한 내용으로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 폭력적인 내용, 사이버 왕따(cyberbullying or trolling), 극단주의자의 행동, 위협, 자해 자극내용 등” 포함 |
| 미성년자에게 노출이 금지 되는 내용 | 미성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포르노, 13세 이하의 사용이 내용” 등 포함 |

출처: Online Harm White Paper(2019)

다만, 온라인 피해 내용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2018년 제정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온라인 피해에 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더 강력한 규제 체계인 데이터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규제대상으로써 온라인 해악(Online Harm)의 범위가 형사적 범죄(불법물질 판매, 명예훼손 등) 또는 민사적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디어법, 저작권법 등으로도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광범위하게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허위정보 대응 가이드라인(disinformation with a behaviour change campaign)

허위정보 대응 가이드라인(disinformation with a behaviour change campaign)은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국 정부는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한다(Behaviour Change)’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여러 형태의 가이드라인(Strategic communications: a behavioural approach)을 제안, 허위정보 대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사이트(Don't feed the beast)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정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온라인 이용자의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이용자 행동지침에는 1)온라인 활용 관련 교육 참가 시작하기, 2)유해한 행동 멈추기(예: 유해 콘텐츠 게재(posting harmful content on social media)), 3)긍정적인 행동 계속하거나 증진시키기(예: 기한 내 납세), 4)유해한 행동 변화시키기(예: 적은 음주, 관계에서 괴롭힘 줄이기), 5)유해한 행동 자제하기(예: 새로운 인터넷 보안규정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RESIST: Counter-Disinformation Toolkit)으로는 1)허위정보에 대한 저항력 증가, 2)여러 유형의 허위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분별(identify) 가이드라인 제안,

3)허위정보 유통 스스로 자제(금지), 4)허위정보가 소속기관에 영향을 줄 경우 대응능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1)허위정보 인식, 2)빠른 경고, 3)상황 판단, 4)영향분석, 5)대응 전략 마련, 6)결과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6) 허위정보 대응 사이트 운영

영국 정부에서는 허위정보 대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허위정보를 식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허위정보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좋아요’를 누르기 전에 확인할 5가지 요소인 ‘출처, 제목, 분석, 사실관계 확인, 오류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7) 영국언론표준기구(IPSO)의 윤리기준 강화 방안(Editor's Code136)

영국언론표준기구(IPSO)의 윤리기준 강화 방안(Editor's Code136)은 언론의 편집자 행동강령으로 신문과 잡지에 전반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한 언론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입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보도는 허위정보와 분리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는 언론인 간 일반합의 기준(generally agreed set of standard and norms)에 따라야 하지만, 허위정보는 아무런 규제 없이 생산·유통되는 정보이므로 구별된다. 둘째,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언론보도와 허위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합법적 뉴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셋째, 사실관계에 기반한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정보 왜곡의 결과를 초래하는 정확성이 결여 된 정보는 허위정보가 된다. 넷째, 허위정보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독립규제기구(IPSO)가 주도하여 허위정보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정확성, 개인정보보호, 괴롭힘, 충격, 자살 유도, 어린이 보호, 범죄 정보보호, 차별, 정보원 보호, 증거보호 등’을 규율하고 있다.

8) 디지털서비스 과세(Digital servixes tax)

허위정보는 온라인을 통하여 생성·전파되므로 인터넷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위원회(ICO)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과세 및 기금마련 방안으로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전체 소득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과세(digital services tax) 제도를 마련하고 형성된 기금으로 허위정보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도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과세제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세 방법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은 인터넷 검색, 게시물 업로드, 온라인 동영상 시청 등으로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 유럽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표 2-19> 영국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주요 논의 현황

| 연도 | 내용 |
|---------|---|
| 2014.01 | 2013 명예훼손법 (The Defamation Act 2013) 시행 |
| 2014.09 | 언론표준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IPSO) 출범 |
| 2017.01 |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위원회(DCMS) 주도의 “가짜뉴스 조사단” 조직 |
| 2019.02 | DCMS위원회 ‘온라인 피해보고서(Online Harm White Paper)’ 발표 |
| 2000. | ‘디지털날인의무화법 제정→ |
| 2021.04 |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s Unit, DMU) 창설 |
| 2023.04 |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 제정안 |
| 2023.05 | BBC검증(BBC Verify) 신설 발표 |
| 2023.09 | 온라인 안전법(안) (Online Safety Bill)’ 의회 통과 |

다. 사례 및 대응현황

영국도 2021년 4월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내에 빅테크 규제를 위한 부서로써 소셜 미디어·검색 엔진·전자상거래와 등과 같은 신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s Unit, DMU)을 창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최근 2023년 4월 25일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 제정안을 선보이며 규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민간기업 BBC는 2023년 5월 BBC 내부에 흩어져 있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검증 전문가와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BBC검증팀(BBC Verify)’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팀은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조작된 영상 유통이 확대되는 등 언론사의 사실 검증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으로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60여 명의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허위정보 및 오정보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 신뢰도 높은 뉴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이탈리아

가. 개념

이탈리아는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해 유럽의회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위 정보, 오도하는 내용,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뉴스나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가짜뉴스는 종종 정치적 이슈, 사회적 논쟁, 또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나. 제도

이탈리아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지는 않고 있지만 2016년 이탈리아의 공정거래 위원장인 Giovanni Pitruzzella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독립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독립기관들은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며, EU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2018년 3월4일, 이탈리아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민들이 웹상에서 유포되는

잠재적인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³⁹⁾ 이는 이탈리아 총선 2개월을 남겨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허위정보 신고 사이트에서 모든 이탈리아 시민은 잠재적인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통신망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청의 ‘통신 경찰’은 이 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접수된 정보가 ‘명백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면 사이트에 공개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 금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마르코 미니티 내무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소란스럽고 노골적으로 근거 없는 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적인 공공서비스 도구’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가짜뉴스 사례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Butac18의 창시자인 미켈란젤로 콜텔리는 이 조치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정확히 어떻게 확인할지 알 수 없고 그들은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정치적인 뉴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이 출처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Giuffrida, 2018.01.19.).

이외에도 이탈리아 외무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국가 및 유럽 대책과 전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외무부는 공공 및 문화 외교 담당 국장을 신설하고, 이탈리아의 국제 포럼에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계획하며, 연성 권력을 증진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신설 국장은 NATO 및 EU 기구 및 전략과 협력하여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응한다.

<표 2-20> 이탈리아의 가짜뉴스 대응 현황

| 연도 | 내용 |
|---------|-------------------------------------|
| 2018.04 | • 이탈리아 정부 가짜뉴스 전쟁선포 이후 허위 정보 사이트 개설 |

39) <https://www.commissariatodips.it/>

| 연도 | 내용 |
|---------|---|
| 2018.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포털 설립(https://www.commissariatodips.it/) ✓ 신고된 내용은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는 국가 경찰 부서인 Polizia Postale에 전달 ✓ 해당 부서는 팩트 체크를 수행하고 법 위반시 제재 |
| 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부의 공공 및 문화 외교 담당 국장 신설 ✓ NATO 및 EU 기구 및 전략과 협력하여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 대응 |

6. 스페인

가. 개념

스페인의 가짜뉴스 정의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의 분류를 따르면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대중을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생성, 제시, 전파된 검증 가능하게 거짓이거나 오도하는 정보’로 정의된다. 이는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보안과 같은 분야에도 적용된다.

스페인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만큼 가짜와 오남용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어로 된 기후 변화위기와 관련한 허위정보의 확산이다. 먼저 ‘올여름 기상이변이 더욱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정보나 ‘풍차나 태양열 발전소와 같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산불을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는 허위정보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 재생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환경 단체 그린라티노(GreenLatinos)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동물에게 해를 끼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허위정보도 유포되고 있다. 이는 연구 공동 저자인 크리스티나 로페즈 G와 산티아고 라카토스가 2023년 첫 6개월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페인어 게시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상위 2만여 개의 게시물 중 약 1만 5천 개의 계정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스페인은 2018년 러시아와 공동으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분석하고 잘못된 정보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교적 조치를 시도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나. 제도

1) 허위정보에 대한 개입 절차(Procedure for Intervention against Disinformation)

2020년 11월 언론매체와 소셜 네트워크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장관령을 제정하고 초법적 상설 기구를 설립하는 등 가짜뉴스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허위정보에 대한 개입 절차(Procedure for Intervention against Disinformation)’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허위정보,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터넷 감시를 통해 가짜뉴스 캠페인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둘째, '가짜뉴스에 대한 상시위원회'가 가짜뉴스 캠페인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셋째, '정치-전략적 수준'으로 상황위원회 또는 정부의 위기 내각이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위원회의 '정치적 대응'으로, 외교적 절차나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결정은 2020년 11월 5일 BOE⁴⁰⁾에 게재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이로써 스페인 정부는 사회당과 공산당, 포데모스 동맹(Unidas Podemos)의 소속 정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존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 정보인지 결정하게 되었다. 헝가리와 더불어 임시적으로 마련한 허위정보 대응 조치를 공식적인 규제로 전환한 것이다.

스페인의 허위정보 대응 조직으로는 스페인 정보보호국(CNI), 스페인 정보보호국

40) Boletín Oficial del Estado, 스페인 국가공보

경찰(CNPIC), 스페인 정보보호국 국립경찰단(CNP) 등이 있다. 이 조직들의 가장 큰 목적은 스페인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발 가짜뉴스 대응 캠페인 및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시행된 ‘허위정보에 대한 개입 절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인 협회나 시민사회 대표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등이 주된 비판이었다. 스페인 야당은 이 절차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을 발생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인권 단체인 ARTICLE 19 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스페인 경찰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스페인 정부가 농담과 잘못된 정보를 범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European Parliament, 2021). 실제로 2020년 2월 스페인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최초의 소송을 개시하고 관련 여성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Hoboken & Fathaigh, 2021). 미디어 전문가와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이 절차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스페인 정부는 국가 안보 및 선거 과정과 관련된 제3국 간섭에 대해서만 해당 텍스트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RSF에 따르면 이 명령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가짜뉴스를 추적하는 것을 명확하게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초안이 작성되어 미디어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하며, 저널리즘 콘텐츠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단점과 부정확성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2)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

스페인인 EU의 신속 경보 시스템과 유럽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협력하여 '가짜뉴스 사건'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스페인 커뮤니케이션 국무차관이 주도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7. 룩셈부르크

가. 개념

현재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르면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허위 정보·오보, 명예훼손·비방, 기관 사칭, 온라인 콘텐츠 조정, 불공정 광고, 정치 광고, 정보 조작 및 외국의 간섭 등 다루어질 수 있는 일련의 주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나. 제도

룩셈부르크는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개선하면서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접근 방식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와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EU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 규제안도 정비하고 있다. 특히 뉴스 기관 및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강조하는 정책이 적용된다.

반면 룩셈부르크에서는 많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개인의 행위로서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룩셈부르크 헌법 제24조에 의해 개인과 언론 모두에 대해 보장된다. 하지만 룩셈부르크 형법 443조(Criminal Code: Article 443)에 따르면 명예훼손 및 비방 범죄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범죄는 가해자가 룩셈부르크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출판물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단순히 복제만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출판이나 개인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현행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도메인 이름을 조작하는 등 다른 조직을 사칭하는 행위는 룩셈부르크 형법에 따라 개인 및 기타 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기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1) 소비자법(Luxembourgish Consumer Code)

‘온라인 콘텐츠 심의’의 의미에 대한 법적 정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룩셈부르크 소비자법(Luxembourgish Consumer Code)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부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허위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물론이고 경쟁사의 상표명, 제품 등과 비교해 혼동을 야기하는 마케팅 활동이나 거래자와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일반 소비자가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관행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오도성 누락(Misleading omission) 또한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지 않은 광고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도성 상업적 관행(Misleading commercial practice)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현행법으로도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2) 자발적 행동강령(voluntary code of conduct)

룩셈부르크에서는 온라인 정치 광고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룩셈부르크의 9개 정당이 선거운동의 방식과 예산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각 정당은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 광고의 재정적 한도를 갖게 되고 선거 운동 기간 인신공격성 모욕이나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으며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8. 노르웨이

가. 개념 및 제도

노르웨이의 가짜뉴스 규제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로 인한 위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규제하며 처벌하는 시도가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허위 뉴스를 용인하는 것이 개방된 사회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가짜뉴스와 싸우는 책임이 개인보다는 미디어와 관련 기관에 더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책임이 미디어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27%만이 이것이 국민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여겼다. 이에 정부 기관과는 달리 언론 기업들이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VG, Dagbladet, TV2, NRK와 같은 주요 노르웨이 언론사와 독립 재단들은 가짜뉴스와 트롤링의 양을 줄이기 위해 'Faktisk'(사실)와 같은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방법이 권위주의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방법이 권위주의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중이다. 노르웨이에도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은 미디어 주도의 이니셔티브와 교육에 기울어져 있으며, 감시나 엄격한 법적 조치를 통한 잠재적 침해에 대해 경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사례 및 대응현황

노르웨이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오늘날 정치적 도구로 널리 사용되며,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한 비난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르웨이에서 가짜뉴스의 존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2021년 의회 및 사미 의회 선거 동안 원치 않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 중 하나는 ‘Stopp.Tenk.Sjekk(멈추고, 생각하고, 확인하라)’라는 정보 캠페인이다.

노르웨이 미디어 권한은 팩트체크 서비스 Faktisk.no, 국립 지역 신문 협회, 민간 보호국(DSB) 및 페이스북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콘텐츠를 읽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을 마련했다. 이 질문들은 기사, 게시물 또는 뉴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르웨이 정부와 미디어가 가짜뉴스와 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관들은 자체적인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제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9. 핀란드

가. 개념

핀란드에서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주류 미디어, 핀란드 사회, 민주주의 및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핀란드 내 주요 가짜뉴스는 대체로 반이민 및 극우 혐오 발언,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비롯되거나 러시아 정부가 조직한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조작정보 캠페인과 관련이 있고 출처는 핀란드 극우 운동, 외국 국가 등에 이른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에 대한 소문이 MV Lehti와 같은 매체에서 뉴스 스토리로 게시되고, 이러한 뉴스 스토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혐오 발언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핀란드 가짜뉴스의 명백한 정치적 목표는

외국인 혐오, 반이민, 인종차별적 수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제도

1)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이자 발트 3국에 포함되어 있던 핀란드는 70년 동안 러시아의 허위정보와 선전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하다. 보편적으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따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생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불가리아 소피아의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핀란드는 유럽 41개국 중 5회 연속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회복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 이외 가짜뉴스와 오남용 정보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핀란드의 이와 같은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위한 공동의 노력 결과라고 보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국가 핵심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핀란드의 교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동영상과 사진을 편집하며 정보조작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거나 포털 검색 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습하고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법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사례 및 대응현황

핀란드 정보 및 보안 서비스(Supo)는 외국 정부나 외국 정보 서비스를 대신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제안은 가장 명백한 형태의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 가능하게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po는 이러한 법이 외국 정보 서비스나 그 대리인이 핀란드의 국가 또는 사회의 의사 결정에 악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적용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형사법 전문가들은 이 제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 간섭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upo는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관련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그리스

가. 개념

그리스에서 가짜뉴스의 개념은 2021년 11월 11일에 채택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에 우려나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국가 경제, 국방 능력, 공중 보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며, 허위 정보의 전파가 실제 피해를 초래했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제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스 의회는 2021년 11월 11일, ‘허위정보’의 정의를 확대하고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형법 제191조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우려나 공포를 유발’하거나 ‘국가 경제, 국방 능력

또는 공중 보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게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우, 3개월에서 최대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 같은 정보를 유포한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한 사람 외에도 정보를 게시하거나 단순히 전달하는 언론 소유주 및 경영진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채택되기 전에는 사회에 '공포심'과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공중 보건 분야의 정보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스 언론인들과 국경없는기자회(RSF)를 비롯한 여러 언론 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으로 인해 언론인들의 직업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고 '허위정보'가 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제껏 그리스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언론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이미 보여 왔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이로 인해 RSF는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새 형법을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단호히 규탄하고 그리스 정부에 형법 개정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허위정보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울 것을 촉구했다.

다. 사례 및 대응현황

2021년 11월 12일 개정된 형법에 따라, 그리스의 한 변호사가 온라인 반 백신 캠페인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있다. 이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팬데믹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새로운 법의 첫 적용 사례로, 변호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환자들의 인공호흡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12월에는 그리스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스테파노스 치오스에게 범죄 저널리스트 조지 카라이바즈의 암살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치오스는 자신이 출판하는 신문에서 그리스 정부 관리들이 카라이바즈의 암살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다니는 신문사 Makeleio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적이며, 반동성애적이고 반공산주의적인 출판물로 알려져 있으며, 일관되게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11. 헝가리

가. 현황 및 제도: 가짜뉴스 대응법

헝가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짜뉴스 대응법’을 발효하였다. 2020년 6월 국가비상사태는 종료되었지만, 그해 11월부터 ‘가짜뉴스 대응법’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가 임의로 가짜뉴스 대응법의 효력을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효과적인 보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위정보 유포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법은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는 개인이 아닌 미디어와 언론인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법이 통과되기 전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감시기관이 언론에게 정치지도자들을 향해 직접 질문할 기회를 박탈하고, 공영방송이 독립 언론의 활동을 ‘가짜뉴스’로 묘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언론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한 정부의 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불미스러운 상황이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헝가리 정부는 주류 및 대안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주로 러시아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단속했는데 이러한 미디어들은 주로 트롤, 가짜 프로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이 정보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가짜뉴스, 조작된 이미지 및 비디오, 증오 연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헝가리의 친정부 미디어나 페이스북은 일부 극우 성향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수 사이트가 가짜뉴스를 포함하고 있다. ELÉG라는 사이트는 강한 언어, 증오스러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종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을 언급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난민, 야당, 조지 소로스와의 그의 네트워크, 유럽의 기독교 뿌리,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등을 주제로 하는 글들을 게시한다.

나. 대응 사례

빅토르 오르반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법’을 통과시킨 이후 언론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한 이유로 구금한 사례가 발생했다. 헝가리 경찰은 페이스북에 정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혐의로 야당 활동가인 야노스 쇼카 슈츠와 정계 은퇴자인 안드라스 쿠신스키, 두 사람을 구금했다. 쇼카 슈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굴라 마을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의 병상 중 1,170개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신고 당했으며 쿠신스키는 팬데믹이 정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시행된 통행금지 완화 제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처럼 헝가리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매우 강력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쇼카-슈츠와 쿠신스키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으로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제2절 북남미

1. 미국

가. 개념

미국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뉴스나 오보에 대한 특별한 연방법이나 시사 및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 ‘공정성 원칙’, ‘통신품위유지법’ 등을 통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1>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 법령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정헌법 제1조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보호 •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선동을 방지하거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의 발행을 제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스나 정치적 발언의 내용을 규제 불가 |
| 공정성 원칙 (The Fairness Doctri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에 제정되어 1987년 폐지 • 방송사들이 대중의 논쟁거리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도록 요구 |
| 통신품위유지법 내 섹션230조항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이 포스트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면책 조항을 담은 법률 • 초기에는 인터넷플랫폼에 적용되었으나, 2010년 이후 방송 플랫폼과 인터넷 플랫폼의 규제가 없어진 이후 방송에서도 중요하게 적용 • 섹션230 조항의 ‘적절한 조치만을 취하면’ 면책되는 내용은 인터넷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왜곡 정보 유통 등에 문제 유발 |

나. 제도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라고 해서 가짜뉴스 유통을 그대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미국 방송은 「수정헌법」에 따라 특정한 이유가 아니면 발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에 대한 일부 규제는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욕설, 성적인 내용, 폭력적인 내용 등 사회의 기본가치를 위협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규제, 그리고 광고방송에 대한 규제, 또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독점금지, 공시의무, 공익방송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러한 미국의 방송규제는 독립기관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⁴¹)가 수행한다. FCC는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심의와 자기규제를 요구하는 기관이다.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허가증을 발급하고, 방송규제를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벌금이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이나 해외 사업자 등에 대한 승인 대상 사업자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내용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방송사업자들의 자체 심의와 자기규제 체계 및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배치하는 형식의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다.

1) 방송에 대한 일부 규제 허용

해당 규정들은 공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품위와 진실성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 뉴스 콘텐츠 내용규제를 명시화한 법은 없지만, 다양한 법 내에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41)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42) 이 법 이전에는 최고 벌금이 3만 2,500달러였으나, 해당 법 제정 후 최대 벌금을 32만 5,000달러로 증가시켰다.

<표 2-22>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

| 구분 | 주요 내용 |
|--|--|
| 명예훼손법 (American libel la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피해를 입힌 정보를 게시한 경우, 그들을 책임에 처할 수 있게 함 명예훼손 입증을 위해서는 발언이 거짓이고 중상적이며, 어느 정도의 과실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
|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4년 통신법 이후 62년만인 1996년에 개정된 법 통신 서비스의 경쟁 촉진 방송 소유권, 인터넷 음란행위에 관한 조항 등 포함 |
| 방송품위강화법 (The 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of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공중파에 품위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외설적 또는 불경스러운 자료에 대해 방송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 부과하는 벌금 확대⁴²⁾ |
| 통신품위유지법 내 섹션230조항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조항 개정 검토 1) 해당 조항 적용범위에 AI생성콘텐츠는 제외하는 방향 논의 진행 2)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 개정 검토 등 |

2) 허위정보 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

미국정부는 2022년 5월 허위정보 유포 및 가짜뉴스 대응기구로 ‘허위정보 관리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허위정보 관리위원회’는 국경 안보, 재난시 미국인의 안전, 민주적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미국 정부에 위협을 가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 연구 및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국토안보부 내 워킹그룹으로 실무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허위정보 관리위원회’가 언론과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정 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모니터링

소통의 장인 가짜뉴스로 불안을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페이스북과 X,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와 오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사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미국 선거 문제 등에 대한 가짜뉴스의 증가는 플랫폼의 콘텐츠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높이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의 가짜뉴스 및 오남용 정보 콘텐츠 심의 문제는 새롭지 않으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심의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틱톡, 릴스 등 숏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자신이 선택한 대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기대를 짓밟지 않고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레이블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플랫폼은 독자 불만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을 제거하며 프로세스와 결정의 투명성을 촉진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관리 감독 기관은 소비자와 정부가 요구하는 콘텐츠 조정에 의미 있는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콘텐츠 심의위원회(Content oversight board)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실제로 미국 지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와 연계한 계정도 차단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일으킨 이후, 다양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한동안 폐쇄했다. X는 복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회사들은 트럼프의 계정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아마존은 인기 극우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팔러(Parlor)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공습 후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확산한 X는 가짜뉴스를

게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개의 하마스와의 연계한 계정을 차단하고 콘텐츠 수만 개를 삭제했다. X의 CEO인 린다 야카리노는 “하마스 공격 이후 며칠간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붙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가짜뉴스와 폭력적 콘텐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특정 뉴스 발생 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틱톡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50만 개 이상의 동영상을 제거하고 이 지역에서 8천 개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유튜브도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수천 개의 영상을 삭제하고, 텔레그램도 하마스와의 연계된 계정을 차단했다. AI 기술 등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폭력적 콘텐츠에 대한 자동 감지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콘텐츠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가짜뉴스와 전쟁을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며 전담 부서를 구축하는 등 콘텐츠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메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운영센터'를 구성했다. 해당 센터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 수십 명들로 꾸려졌으며, 실시간 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있다. 틱톡도 가짜뉴스 게시물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지휘센터(command centre)를 설치했다.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를 두고 콘텐츠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 인원도 대거 배치했다. 구글 유튜브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면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4) 팩트체킹(Fact Checking)

팩트체킹(Fact Checking)은 언론계에서 흔히 쓰는 ‘사실 확인’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사실 유무를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정해 이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언론의 적극적인 실천적 역할을 의미하며 독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팩트체킹(Fact-checking)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주로 뉴스 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독립적인 팩트체킹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팩트체킹의 주요 목적은 공공의 대화와 의사결정 과정에 정확한 정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로써 다양한 사실 확인 조직과 이니셔티브가 정보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존재하며, 특히 선거와 같이 주목받는 정보에 대한 거짓 주장이나 오보를 밝히고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팩트체킹이 미국에서 확산된 것은 2000년대 초다. NAF(New America Found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신문에서 팩트체킹을 언급한 사례가 900% 이상 증가했고, 방송에서는 2,0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API(American Press Institute) 조사에서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문에서 팩트체킹 언급 횟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체킹은 특히 소셜 미디어 시대에 중요해졌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팩트체킹은 오류나 고의적인 거짓 정보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4년에는 구글 연구소와 텍사스대학교, 듀크대학교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팩트체킹을 위한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개념이 발표되었다.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클레임버스터(ClaimBuster)'라는 자동 팩트체킹 도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인들의 발언, 정책 주장, 선거 캠페인 등에서의 사실 확인이 강조되며, 정치적 진술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전문 웹사이트와 조직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5) AI/딥페이크 기술 대응

AI 기술이 정치광고 등에서 악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하는 메타는 2024년부터 정치 등의 광고에 다른 기업의 AI 기술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전 세계 광고주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광고에 이미지 생성기인 '달리'와 같은 제3자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의 AI 기술은 정치나 사회적 이슈 광고는 물론 주택·고용·제약·금융 서비스 관련 광고를 제작할 때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메타의 SNS 플랫폼에 정치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AI 도구 사용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광고는 거부될 수 있다.

구글 또한 유튜브 혹은 다른 구글 플랫폼에서 AI 사용했을 경우 정치광고에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경고 딱지 부착을 의무화했다. 유튜브는 2024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크리에이터는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은 콘텐츠는 삭제할 방침이다. 또 이런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정치광고를 아예 차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메타, 구글 등은 또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어 AI를 활용한 사기 등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처럼 미디어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AI/딥페이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 내 많은 주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해 AI/딥페이크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1월 기준, 이미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에서는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처벌에 초점을 두는 범위와 형량은 상이하다. 우선 버지니아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현행 형법을 확대 개정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포르노 비디오에 디지털 얼굴을 입히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 5월 뉴욕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범죄 처벌'법안 또한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중 상당수가 관계없는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이며 이러한 제작물이 사이트에 게시된다면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가 극심하기에 본인 동의 없는 딥페이크 유포를 범죄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배경으로 제정되었다"고 에이미 폴린 주하원의원이 밝혔다. 이처럼 성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해 '괴롭힘 또는 협박'을 목적으로 제작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모두 경범죄로 속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룬다. 반면 텍사스에서는 선거 이전 정치 후보자를 허위로 보여주는 동영상 제작하는 등 선거 개입을 위해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다. 워싱턴에서도 다양한 딥페이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딥페이크 제작물에서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 사례 및 대응현황

방송이나 온라인의 가짜뉴스 유통 관련 규제가 없는 미국 특성상, 각 기업들은 가짜뉴스 유통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 배상 청구, 명예훼손 소송 등 개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 채널 폭스(FOX)와 선거 개표 시스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Dominion Voting Systems)간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는 팩트를 왜곡한 방송이 얼마나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1년 4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는 폭스를 상대로 ‘폭스가 2020년 자사의 개표 시스템이 조작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렸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는 폭스가 ‘의도적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해 선거를 조작하고 우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폭스의 거짓말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를 매우 악명 높은 회사로 변모시켰고 이 때문에 직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살해 위협을 받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의 영업실적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파 방송에서 개표 시스템이나 투표 부정에 대한 음모론들이 다수 나왔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개표 시스템 회사가 언론을 소송한 것도 처음이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는 이에 앞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친트럼프 성향의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 변호사,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필로우(MyPillow) CEO 마이크 린텔을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폭스 뉴스에 게스트로 출연한 경험이 있다. 당시 파웰은 이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방송에서 그녀는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라며 선거 조작 계획에 대한 그녀의 주장이 ‘진정한 사실 진술(were truly statements of fact)’이라고 강조했다. 폭스 또한 이번 소송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오보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어려웠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도 폭스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의를 지니고 있음과 그러한 거짓 진술이 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그동안 미국 법원은 의도하지 않은 오류(Unintentional errors)는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폭스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와 2023년 4월 18일,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폭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와 합의하면서 루퍼트 퍼독 창업주, CEO 등이 재판을 피했지만 8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보상해야 했다. 폭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에 지급한 돈은 7억 8,750만 달러로 명예훼손 합의상 역사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방송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징계로 의미가 크다. 향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방심 심의 및 명예훼손 소송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별다른 규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이 시비를 가리는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가짜뉴스 유통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다. 루디 줄리아니는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지아주 선거 사무를 본 이들이 옷 가방에 표를 가지고 들어와 검표기에 넣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도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줄리아니의 허위 주장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15일 원고들이 헛소문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입은 감정적 피해

배상액을 7,300만 달러,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7,500만 달러로 판단해 총 1억 4,800만 달러(약 1,927억 원)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2023년 12월 21일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2020년 대선 개표조작설을 퍼뜨린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루디 줄리아니 뉴욕 맨해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성명을 내고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파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줄리아니는 법원에 낸 서류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밝혔고 현재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캐나다

가. 개념

캐나다의 가짜뉴스 규제 개념은 주로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짜뉴스는 종종 사실이 아닌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대중의 의견 형성과 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장려하고 오도하는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아래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모든 시민이 다양한 관점과 정보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정보 접근성이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정보 불평등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는 미디어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이다. 세 번째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규정을 확립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및 윤리적 규정 준수이다.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질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제도

캐나다도 가짜뉴스나 오남용 정보 대응을 위한 명확히 대응되는 특정 법률은 없다. 그러나 아래의 법률 개정 및 조항 등을 통해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짜뉴스에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표 2-23> 가짜뉴스 규제 관련 법

| 구분 | 주요 내용 |
|--|---|
| 방송법 (Broadcasting Ac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개정 추진 1)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관련 2) 캐나다 콘텐츠 제작 기여 관련 항목 추가 등 |
| 캐나다 선거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및 거짓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존재 •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거짓된 진술 금지 등의 규정 포함 |
| C-18 (Bill C-18 the Online News Ac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6월 법제화 • 디지털 대기업(구글, 메타)이 자사 플랫폼에서 캐나다 뉴스 콘텐츠를 계속 포스팅하려면 언론사에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법⁴³⁾ • 가짜뉴스나 오남용 정보를 양산하는 유사 언론 대신, 지역이나 정통 언론에 지원금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43) 구글은 2023년 11월 30일, 캐나다 매체 뉴스 사용 대가로 캐나다에 매년 1억 캐나다달러(약 952억원)의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메타는 플랫폼에서 캐나다 뉴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힘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와 경쟁청(Competition Bureau)’과 같은 규제기관에서는 미디어와 광고의 다양한 측면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면서 특정 맥락에서 거짓된 정보나 오도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및 중요한 사안 중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확인(Fact checking) 조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짜뉴스의 거짓 주장을 드러내고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교육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비평적 사고 능력을 촉진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2-24> 캐나다 팩트체킹 조직

| 구분 | 내용 |
|----------------|---|
| AFP Fact Check | AFP (Agence France-Presse)의 팩트체킹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캐나다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를 식별 |
| FactCheck.org | 미국에 기반을 둔 이 조직은 북미 지역 전반에서 활동하며, 캐나다의 정치적 주장과 뉴스에 대한 팩트체킹을 제공 |
| CBC News | 캐나다 방송 협회(CBC)는 자체 팩트체킹 서비스를 운영하여, 캐나다의 뉴스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 |

또한, 캐나다에는 여러 팩트체킹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주로 뉴스 및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특히 정치적 발언과 공공 정책에 관한 주장을 분석한다. 이 조직들은 다양한 뉴스 소스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정보의 진위를 분석하고, 사실 기반의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 내에서 팩트체킹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미디어 소비자들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 사례 및 대응현황

캐나다는 가짜뉴스를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해독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9개월 동안 23개 프로젝트에 7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며 시민 비판적 사고 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는 시민, 뉴스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세션 및 워크숍, 학습 자료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디지털 시민 이니셔티브(Digital Citizen Initiative)도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포용을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캐나다 연구자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온라인 가짜뉴스와 캐나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행동을 식별하며 미래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디지털 시민 기여 프로그램으로 350만 캐나다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 해당 자금을 통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오보 및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팬데믹과 관련해 인종차별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영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주는 10개 단체를 지원했다.

3. 브라질

가. 개념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와 같은 용어는 빠르게 브라질인의 일상 속으로 퍼졌다. 2018년 브라질 선거에서 선거 과정,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구성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의 타깃이 되었다. 증거가 부족한 선거 사기 혐의부터 아마존 열대 우림 중심부의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신화에 이르기까지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특히 브라질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⁴⁴⁾, 페이스북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⁴⁵⁾하면서 가짜뉴스와 대응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알렉산드레드 모라에스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⁴⁶⁾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투옥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선동적인 것으로 알려진 우익 소셜 미디어 계정 수십 개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가짜뉴스’라는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없다. 학술 문헌이나 미디어 담론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나 ‘허위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 사회 집단, 조직 또는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로 생성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볼 수 있다. 오보, 허위지만 해를 끼칠 의도로 만들어진 정보와 구별해야 한다. ‘허위정보’는 현실에 근거한 정보로 개인이나 조직, 국가에 해를

44) 2021년 기준, 브라질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은 2억 4,200만 대이며, 주민당 평균 1대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 브라질의 페이스북 사용자(세계 5위의 소셜 미디어 시장)는 약 1억 2,700만 명에 달하며, 2025년에는 인구의 72% 이상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6) <https://www.context.news/digital-rights/opinion/disinformation-and-consequences-in-brazil>

끼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 언급하고 있다.

나. 제도

브라질에는 소셜 미디어 규제를 다룰 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법률이 있다. 선거 규칙 610/2019는 캠페인 광고를 규제하고 인터넷을 통한 광고사용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여 선거법을 규제하고 있고, 법률 891/2013에 의한 개정 이후 온라인 콘텐츠 제거도 다루고 있다.

1) 가짜뉴스금지법안 : bill 2630/2020

오늘날 많은 공개 토론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들의 ‘친구’와 ‘팔로워’와 함께 소위 ‘가짜뉴스’의 확산은 공개 토론을 두 이야기의 대결로 공공영역의 양극화를 만들었다. 브라질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브라질 상원은 브라질의 인터넷 자유성, 책임성 및 투명성 법률 가짜뉴스법안(2630/2020, PL das Fake News)을 238대 192로 신속하게 승인했지만 아직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허위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이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플랫폼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규제이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 메시지(왓츠앱과 같은)를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삭제된 허위조작정보 계정의 수, 조작된 계정의 수를 포함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보고 내용에는 플랫폼에 존재하는 계정(봇), 접수된 불만 건수, 사용자가 불만을 접수해서 해결하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학술적 연구 목적에 따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왓츠앱과 같은 개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게 다양한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아동, 의료 시스템, 여성에 대한 공격, 민족적 우월감, 테러, 자살이나 자해를 선동하는 행위 등에 관한 7개 영역에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거나 즉시 정지하도록 요구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벌금 비용도 있다(제14조).

<표 2-25>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법안의 6가지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모션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제3자 콘텐츠에 대한 공급자의 공동 책임과 함께 모든 프로모션 및 광고 콘텐츠를 식별 2.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반기별로 콘텐츠의 조정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 3. 당국의 계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4.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즉각적인 삭제 요구 사항 진행 5. 잘못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포함하여 인터넷의 안전하고 의식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교육 진행 6. 플랫폼에 의한 저널리즘 콘텐츠 지불 |
|--|

출처:<https://www.conectas.org/>(2023.05.02.)

소셜 네트워크와 개인 메시징 앱(브라질에서 2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이 국가 신분증을 요청하여 모든 계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출판물의 열람을 차단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측에서는 직권 남용이나 공익 프로필 개입이 불법인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권과 합법성, 비인격성, 도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안 2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7일, 초안을 분석하여 최종 수정안에서는 7조 ‘계정

등록'을 축소하여 필수 식별의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이 되도록 했다. 개정된 텍스트에 따르면 회사는 가짜뉴스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거나, 봇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실하지 않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원을 사칭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와 개인 메신저 앱 역시 계정 생성 시 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제7조 1항) 마련을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조항은 대부분 기업의 기존 관행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뉴스 법안에 명시된 새로운 의무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수정안은 8조 '계정 등록'을 휴대폰 번호에만 연결된 개인 메시징 계정에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좁혔다. 개인 메시징 서비스는 앱 내 관련 계정을 정지하기 위해 계약이 해지된 번호를 이동통신사에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 조항에서는 소셜 네트워크가 제외된다. 한편, 법안 시행에 핵심이 되는 허위조작정보 및 허위정보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표 2-26> 브라질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연도 | 내용 |
|---------|--|
| 2020.06 | 가짜뉴스금지법안 : bill 2630/2020(PL2630) 상원에서 통과 |
| 2023.04 | 가짜뉴스금지법안 : bill 2630/2020(PL2630) 하원 회부 |
| 2023.05 | 가짜뉴스금지법안 : bill 2630/2020(PL2630) 법안 시행 논의 중 |

다. 사례 및 대응현황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허위정보가 확산되었는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중심이 되었다. 이에 브라질 대통령은 2021년 9월 6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코로나19의 잘못된 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요구했다.

가짜뉴스방지법(2630/2020)이 승인되기 직전인 2023년 5월 1일, 구글은 브라질 홈

검색 페이지에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의회 대표에게 법안 반대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와 사법부는 해당 회사가 의회 토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난하며 이는 경제적 권력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에 통지 후 2시간 이내에 광고를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R\$100만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은 즉시 광고를 삭제했다. 5월 9일, 텔레그램은 이 법안이 국내 언론의 자유를 종식 시킬 것이라고 사용자들에게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텔레그램이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에게 철회 메시지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그렇지 않으면 3일간 차단되고 R\$500,000(US\$92,764.38)의 시간당 벌금이 부과했다. 회사는 판결을 따랐다.

제3 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 일본

가. 개념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뉴스 형식으로 제시되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종종 개인이나 단체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가짜뉴스는 역사적으로 항상 유포되었으며, 1890년대부터 사용된 용어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고정된 정의가 없으며, 다양한 종류의 거짓 정보에 널리 적용해 왔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가짜뉴스를 편별하고 있다.

나. 제도

일본의 가짜뉴스와 오남용 정보에 대한 규제는 주로 기존의 미디어, 선거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가짜뉴스, 특히 선거 및 재난 중의 잘못된 온라인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국 기술 대기업 및 기타 정보 제공자에게 행동강령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및 구글과 같은 미국 거대 플랫폼 및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의 기술 회사들에게도 온라인 앱을 통한 뉴스 제공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1)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및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인 프로바이더의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어 2022년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을 제정했다.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은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권리침해 정보가 게재되었을 경우 접속 사업자(프로바이더)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⁴⁷⁾이다. 이 법으로 인해 심한 악플을 쓴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데 드는 번잡한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였다. 그전까지는 악플 대응을 하려면 통신사업자 등에 별도로 재판을 제기해 ‘악플러’의 정보를 알아내야 했고, 정보공개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렸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무척 짧아졌다.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에서부터 결정이 빨리 내려졌다.

2) AI/딥페이크 기술 대응

정교하게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빠른 시간내에 손쉽게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일본 정부와 언론계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응 방안은 독자들이 진짜 뉴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3의 인증기관이 일종의 ‘뉴스 신분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일본신문협회는 정확한 취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디지털 기술의 악용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원작자 프로파일(OP)’⁴⁸⁾ 기술을 제시했다. OP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일본 게이오대와 함께 일본 주요 언론사 등 31곳이 참여해 개발 중인 기술로, 일종의 뉴스 신분증 역할을 한다. OP 도입 후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특정 뉴스를 클릭하면 이를 작성한 언론사 정보와 편집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별도로 볼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온라인 신문 기사 일부분을 발췌해 짜깁기하거나 영상을 편집해

47)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三年法律第三十七号)

48) 인터넷 기사 등에 제3자 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부여해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기술

그렇듯하게 만든 가짜뉴스를 OP를 통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추후 모든 일본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모든 뉴스에 OP가 부착되면 이 정보가 없는 기사는 자동으로 가짜뉴스로 걸러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OP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회사가 해당 기술을 허용해 줘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다. 사례 및 대응현황

2022년 10월 3일, 투모로게이트(Tomorrowgate)사는 자사 직원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월6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트위터 측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흘 만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린 재판소의 의지가 엿보였다. 이에 앞선 2022년 6월에는 인터넷상의 중상·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형사법이 개정되었다. 2020년 SNS의 악플·모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의 가족이 앞장서서 운동을 펼친 결과다.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가짜뉴스 사례도 확산되고 있는데 2022년 9월 제15호 태풍 탈라스가 일본을 덮치면서 시즈오카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드론으로 촬영한 시즈오카현의 수해 상황,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물바다가 된 시즈오카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이미 태풍으로 지역 사망자가 발생하고, 건물 수십채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던 상황이었어서, 공포감에 빠진 현지 네티즌들이 해당 게시물을 5,000번 이상이나 리트윗(공유)했다.

[그림 2-1] 가짜뉴스(허위정보): 시즈오카현 태풍 피해 사진



출처: 조선일보 보도자료, “가짜뉴스 전성시대, ‘AI로 맞짱뜨겠다’는 日 스타트업”(2023.09.06.)

하지만 이후 이 사진은 ‘가짜’로 밝혀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사진들처럼 동네가 물바다가 되는 등의 극한의 상황은 아니었다. 작성자는 최신 유행하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수해(flood damage)’, ‘시즈오카(shizuoka)’, ‘자세하게(detailed)’ 영어 단어 단 세 개를 입력했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가짜 동영상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확산되었다. 해당 영상은

양복차림의 기시다 총리가 등장해 악담 등을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현지 민영 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 뉴스 프로그램 로고와 ‘Live(생중계)’, Breaking News(뉴스 속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혼란이 가중됐다. 이 동영상은 하루 만에 232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을 진짜로 착각하고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림 2-2]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가짜뉴스 영상



출처: 동아일보 보도자료, “용서 못해. …기시다 총리 ‘가짜 영상’”(2023.11.04.)

해당 가짜 동영상은 오사카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 자민당 대회 연설 등의 동영상 내의 총리 음성을 AI에 학습시켜 가짜 음성을 제작했으며, 재미로 만들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국내외의 허위정보 캠페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2023년 소셜

미디어 및 기타 플랫폼에서 가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행위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법을 추적하려고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해치는 정보도 다룰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를 정기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민간 부문 전문가를 채용하고 허위 정보 캠페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와 사업자뿐만 아니라 군대도 참여하고 있다. 육상 자위대는 10년 이내에 정보 전담 부대를 창설하고 해상자위대는 사이버와 통신 능력을 결합한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도쿄 게이오 대학 교수이자 정보 기술 전문가 츠치야 모토히로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허위 정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저해되어왔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율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2020년 2월 총무성의 플랫폼 서비스 연구회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에 대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대응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허위정보 판단의 불확실성, 해외 법적규제 운용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다. 만약 자율적 규제 체계가 자리잡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관여할 가능성 존재한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팩트체크 능력 제고 등의 활동으로 대응을 진행한다.

2. 호주

가. 개념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및 허위정보(misinformation) 방지’ 초안⁴⁹⁾에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법적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허위정보(misinformation)는 거짓이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기만적인 정보의 온라인 콘텐츠를 말하며, 기만하려는 의도 없이 공유되더라도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호주 내 한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전파되고, 해당 콘텐츠로 인해 심각한 피해(serious harm)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담겨 있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오락, 패러디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선의로 제작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문 뉴스 콘텐츠, 연방정부나 주·지방 정부에 의해 인가된 콘텐츠, 그리고 인증받은 교육기관에 의해 제작되거나 그 기관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에서의 허위정보(misinformation)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잘못된 정보가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때때로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보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고 정의한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용자를 웹페이지로 유인하는 데 사용되며,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게 하여 금융사기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배포되는 정보로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끼치거나 고의적인 의도로 퍼트린 정보이다. 따라서 규제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호주의 사회, 경제, 보건, 환경 등 중요한 부분에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모두 포함한다.

<표 2-27> 심각한 피해(serious harm) 유형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이 전파되는 상황 2. 내용상의 허위, 오인 또는 기만적인 정보의 소재 |
|---|

49)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Combating Misinformation andDisinformation) Bill 2023,p10.

3. 전파의 가능성과 속도
4. 전파의 잠재적 영향의 심각성
5. 그 정보의 저자
6. 전파의 목적
7. 정보가 정보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정보원의 권한 및 그 정보원이 옳은지 아닌지
8. 기타 관련된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으로 유포된 정보
9. 다른 관련 사항

출처: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2023)

한편,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피해(serious harm)’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나. 제도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이 2020~2021년 실시한 잘못된 정보 확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허위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페이스북, 위챗, 트위터(현 X)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76%의 응답자가 가짜뉴스 및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호주 사회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부터 호주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인권, 사회적 결속, 민주적 절차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했다. 2017년 당시 재무관이었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광고주 및 소비자에게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및 저널리즘 콘텐츠 공급이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다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플랫폼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2019년 최종보고서에서 “고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유해한 뉴스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행동강령”을 권장하며, 적절한 대응을 명시했다. 이에 일부 주요 플랫폼⁵⁰⁾에서 자발적 행동강령을 작성했고, 통신미디어청(ACMA)은 플랫폼이 행동강령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같은 해 온라인에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보고했으며, 행동강령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연방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 Morrison 정부는 통신미디어청(ACMA)에 새로운 규제 권한을 부여하여 거대 기술 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규제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선거에 나섰다.

1)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방지

2023년 6월 선거 후 노동당은 디지털 플랫폼을 검토한 호주 정부는 6월 25일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방지> 초안을 발표했다.⁵¹⁾ 개정안에서 통신미디어청(ACMA)이 "업계 규정을 등록 및 시행하거나 업계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예비 권한⁵²⁾"을 가지고 호주에서 유해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 정보·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플랫폼 사들은 앞으로 자사 플랫폼이 배포·공유하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개정안의 핵심은 호주 통신미디어 규제기관인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권한 강화에 있다. 업계와 협력하여 정보 수집, 기록 보관, 코드 등록 및 표준 제정 권한을 검토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위협으로부터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50)Google, Facebook, Microsoft, Twitter, 2021년 TikTok, Redbubble, Apple 및 Adobe 서명함.

51)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2023).<https://www.infrastructure.gov.au/>

52)ACMA는 특정 콘텐츠나 게시물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없다.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사의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다음을 포함한 강화된 집행 권한도 부여받을 것이다.

<표 2-28> 통신미디어청(ACMA) 강화된 권한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특정 기록을 통신미디어청(ACMA)이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그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사들이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산업의 (자발적)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미디어청(ACMA)은 이를 등록하고 관리·감독한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사들이 마련한 실천 강령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형태의 산업 표준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산업 실천 강령의 자율규제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 시행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넷째, 선거 및 국민투표 내용이 정보 범위 내에 있을 때 권력 (비록 정당에 대한 의무로 확장되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행위에 관하여) 통신미디어청(ACMA)에 의해 처벌 부과 등 행사할 수 있다.

출처: Combatting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2023)

법안과 새로운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 플랫폼 또는 개인에 대해 상당한 처벌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통신미디어청(ACMA)에 제공한 정보가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 다음으로 마련한 실천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최대 벌점은 10,000벌점(275만 달러)으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그 이상) 벌금이 있다. 그리고 업계 표준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벌점 25,000 벌점 (\$688만 달러)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5% (더 높음) 등의 처벌규제를 발표했다. 개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만약 벌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플랫폼 공급자에게 민사처벌 절차 등이 진행된다.⁵³⁾ 호주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되는데, 소셜 미디어·검색

53)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2023),p25.

엔진·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뉴스 애그리게이터(agggregator)서비스 및 팟캐스트 서비스가 모두 해당한다. 아울러, 공개 채팅방 혹은 공개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공유되는 콘텐츠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호주 정부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이며, 통신미디어청(ACMA)이 개별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게 서비스 내에서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호주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의 피해 등 주요 용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요 문제는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로 분류되는 피해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피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피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이 심각한 피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콘텐츠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만 요구하는데, 콘텐츠가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피해 기준은 인과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기여만 요구하며 최소한의 기여 수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콘텐츠가 잠재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우려는 제안된 법률이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콘텐츠인 제외 콘텐츠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식 정부 출처로부터 받은 정보에 부여하는 강화된 합법성과 권위를 고려할 때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 콘텐츠에 특권을 부여하지만 야당, 군소 정당 또는 무소속이 승인한 콘텐츠에는 동일한 지위가 부여되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 콘텐츠는 결코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없지만, 정치적 반대자들이 생산한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정보를 검열하는 모든 법률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 우려 사항은 법안 초안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제공업체와 (간접적으로) 통신미디어청(ACMA)에 부여된 디지털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이 있다. 정부 부서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든 어떤 기관이 검열된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데는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 여기서 위험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맞서려는 노력이 대중 토론을 제한하고 인기 없는 의견을 검열하려는 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명성과 정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한편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장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차단하는 것 사이의 올바른 균형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2021년 7월 23일 기존의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아동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 모두 행정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⁵⁴⁾의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등을 규제한다. 이러한 서비스 및 플랫폼 내 게시물, 댓글, 이메일, 메시지, 채팅 등에 모두 적용된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54) ‘온라인안전국’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의 지원을 받는 독립 행정 기관으로서, 국장은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부의 ‘통신·도시기반·도시·예술 장관’이 임명한다.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행정기관의 신고시스템과 미이행 시 민사 처벌 부과로 신속한 콘텐츠 삭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은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와 ‘동의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등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테러행위 등 ‘혐오스러운 폭력행위 묘사 콘텐츠’ 등에 대하여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표 2-29> 호주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연도 | 내용 |
|---------|---|
| 2017.01 | 소비자위원회(ACCC) 디지털 플랫폼 검토 |
| 2019.12 |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PD) 설립 |
| 2020.12 | 「온라인 안전법」 초안 발표 |
| 2021.02 | 호주 실천강령 제정, 디지털 산업 그룹(Digital Industry Group Inc,DGI) 운영 |
| 2021.07 | 「온라인 안전법(2021)」(Online Safety Act 2021) 제정 |
| 2022.03 | 「통신미디어청(ACMA)」 새로운 규제 권한 부여 |
| 2023.06 |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방지> 초안 발표 |
| 2023.08 |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방지> 개정 |

다. 대응현황 : 거버넌스 조직 운영

2021년부터 호주 정부는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한 호주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와 모든 서명자에 대한 의무적 약속을 포함하는 산업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강령은 대중, 산업, 정부가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에 맞서기 위한 기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관련하여 2019년에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행동강령에 따른 자발적으로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는 방법 및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정부 대응 및 실행 로드맵을 안내하는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PDM)⁵⁵⁾가 설립되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PDM) 관리에는 독립적인 감독과 대중이 행동강령 서명자의 위반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디지털 산업 그룹(Digital Industry Group Inc, DIGI)⁵⁶⁾은 호주 정부 내에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전파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허위 정보 및 허위 정보에 관해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실천강령을 검토하고, 호주 실천강령의 서명자⁵⁷⁾가 해당 강령에 따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디지털 산업그룹(DIGI)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도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명자가 호주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연간 보고서를 검토하여 관리 및 발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명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디지털 산업그룹(DIGI) 웹사이트에서 양식에 따라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의 확산 결과, 그리고 매년 법의 조항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사를 평가하고,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업데이트하여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유한다. 한편 디지털 산업그룹(DIGI)에 접수된 불만 사항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이때 그 절차는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PDM)의 규정에 따른다.

55) ACPDM은 디지털 플랫폼 조사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에 발표된 정책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여기서 디지털 업계는 허위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강령을 개발하도록 요청 받아, DIGI와 함께 개발했다.(digi.org.au/disinformation/transparency)

56) DIGI(Digital Industry Group Inc.)는 호주의 디지털 산업을 개선하며 온라인 안전,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번영하는 호주 디지털 경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비영리 산업 협회

57) Adobe, Apple, Meta, Google, Microsoft 및 TikTok을 포함한 서명자가 있다.

<표 2-30> 디지털 산업그룹(DIGI) 내 역할

| 구분 | 역할 |
|-----------------|--|
| 민원소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 소위원회는 독립적이며 강령에 따른 약속 서명자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만 해결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서명자와 불만 제기자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불만 사항 청취 |
| 투명성 보고서의 독립적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 사례와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서명자의 투명성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증명 제공 • 검토자는 모범 사례 보고에 관해 서명자에게 권장 사항 제시 |
| 행정분과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위원회는 서명자가 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를 모니터링, 예를 들어 불만 처리 운영을 검토하고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 DIGI의 연례 보고서 검토 |
| 서명자 운영 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업이 실천강령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DIGI 구성원이 아닌 기업도 원하는 경우 실천강령에 대한 결정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함 |

출처: <https://digi.org.au/>

디지털 산업그룹(DIGI)의 민원소위원회는 관련 기술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대표하지 않는 최소 2명의 독립 회원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디지털산업그룹(DIGI) 대표가 맡는다. 간사는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PD)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소위원회에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기록하고, 민원소위원회의 결정 및 보고를 문서화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간사는 민원소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회의에서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관련하여 최근 조치 중 하나로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X(이전 트위터)에 대해 사용자가 X의 시민 청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선거 과정에서 '참여 방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관해 X가 게시한 정책을 위반하거나 유권자 '억압' 및 '협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하려 했지만 신고할 수 없었다. 즉, 대중이 정치 분야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채널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 사항의 주장을 DIGI에 불만을 제기했고 확인했다.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X 웹사이트에 대한 독립적인 종합조사를 실시했고, X는 변호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X는 참석 통지를 받았음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통지를 받은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참석 의사를 철회했다. 이후에도 X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서면 제출도 하지 않았고, 항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27일 디지털 산업그룹(DIGI)는 해당 불만사항에 ‘적격 불만 사항’으로 평가, X는 정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산업그룹(DIGI)와 협력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결론에 따라 디지털 산업그룹(DIGI)에 의해 호주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관한 실천 강령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PD) 서명자 자격에서 제외되었다.⁵⁸⁾

이 밖에도 X는 자사 플랫폼의 아동 학대 자료 방지에 관한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 최근 \$600,000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X는 할당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같은해 6월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X에게 법적 고지를 발행하여 플랫폼에서 증오심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X의 조치 및 대응을 요청했다. 이는 위원회가 작년 기준,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X에 대한 온라인 증오 관련 불만 사항이 많이 접수됐으며 작년 10월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심각한 온라인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였다.

58) <https://ia.acs.org.au/article/2023/x-kicked-off-misinformation-code-for-serious-breach.html>

3. 싱가포르

가. 개념

싱가포르 정부에서 언급하는 가짜뉴스는 의견과 비판, 풍자나 패러디가 아닌 허위를 표적으로 삼아 악의적인 행위자가 만들어 낸 고의적인 것으로 온라인에서 퍼지는 허위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실의 진술로 설명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항 후 영국 식민지기를 거쳐 독립국가로 거듭나기까지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계의 다인종,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립 후 지금까지 국민국가 싱가포르의 최우선 과제는 인종, 종교, 문화가 이질적인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어 ‘단합’이 싱가포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싱가포르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대중을 당황하게 하며, 비상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과 사람들의 평판을 손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고, 외국 기관과 외국 정부가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제도

싱가포르의 독립을 앞두고 1964년에 발생한 폭력적인 인종 폭동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종적, 종교적 화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국민은 자국의 주류 언론을 가장 신뢰하는 나라 중 한 곳이다. 대표 신문인 스트레이트타임스는 2021년도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77%로부터 신뢰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높은 신뢰를 받는 싱가포르의 언론계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POFMA)

무책임한 허위·조작 보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다양한 통제 장치는 의도한 대로 사실 전달에 충실한 보도 관행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싱가포르는 2019년 각종 언론과 인권단체의 강한 우려에도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방지법’을 도입했다. 정부가 언론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를 ‘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2018년 9월 싱가포르 정부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온라인상 허위 또는 조작된 뉴스, 그 결과 및 조치 등을 조사하여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2019년 5월 8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도 2019년 6월 3일 대통령의 승인으로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⁵⁹⁾은 2019년 10월 2일부터 법안 효력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이제 정부는 허위정보라고 판단한 온라인상 뉴스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기사와 함께 정정 기사를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개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IT업체를 대상으로도 허위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법 위반 시 IT업체에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벌금이,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린 개인에게는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게시물이 천차만별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해외에서 저지른 위법 사안에도 적용한다.

산무감(K. Shanmugam) 법무·내무부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종교 관련 혐오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소셜 미디어의 오남용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강경

59) <https://sso.agc.gov.sg/Act/POFMA2019?TransactionDate=20191001235959>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싱가포르에서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지지와 영향을 억제하며, 이러한 온라인 계정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조작을 방지하고, 온라인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률 및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 2부에 따르면 통신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있지 않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허위사실 진술을 전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짜뉴스가 싱가포르의 보안, 공공 안전, 우호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 선거 및 국민투표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 정부는 6개월간 온라인상 허위 뉴스를 3개 이상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웹사이트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기사를 삭제 내지는 정정하거나 콘텐츠 접근을 막는 등 지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31>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에서 정의하는 공익 위반행위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의 일부 지역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2. 공중 보건, 공공 안전, 공공 재정에 해를 끼치는 행위 3. 싱가포르와 다른 나라의 우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 대통령직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는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 증오 또는 악의의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 5. 정부, 국가 기관, 법정 이사회 또는 정부의 일부, 국가 기관 또는 법정 위원회의 의무 또는 기능 수행 또는 권력 행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행위 |
|--|

출처: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은 실사 조치 시행, 정기적 기록 관리 보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조치, 벌금, 심지어 징역형이 내려진다.

<표 2-32> 형량 범위

| 유형 | 형량범위 |
|------------------------|-------------------------------|
| 온라인 플랫폼 | 최대 SGD 100만 달러(8억 7천만원)의 벌금 |
| 개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SGD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
| ‘봇(소프트웨어 로봇)’ 또는 가짜 계정 | 최대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 벌금 SGD 10 |
| 기업 | SGD 50만 ~ 100만 달러 벌금 |

출처: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

이 법안으로 페이스북은 2021년 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법이 '검열 도구'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밝혔으며, 이 법이 싱가포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인권단체에 합류했다. 인터넷 및 기술 기업 협회인 아시아 인터넷 연합(Asia Internet Coalition)에서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싱가포르의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은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한 법률"이며, 정부는 이 법이 허위만을 다루고 있으며 정당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⁶⁰⁾ 오히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가짜뉴스를 다룰 때 상업적 이익 때문에 방해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것을 기술 플랫폼에 맡길 수 없다는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평가들이 말하는 온라인 허위사실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 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개발기관(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에서도 온라인 안전 코드가 2023년 7월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국에 유해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고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살, 아동 성착취, 테러를 조장하거나 조장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볼 수 있다.

60)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hanmugam-social-media-firms-put-profit-above-principle-on-fake-news>

2) 공공질서 및 소란법

이 밖에도 싱가포르에서는 가짜뉴스 전파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을 유발하는 자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06년의 기타 범죄 「공공질서 및 소란법」에 해당한다. 한 택시 운전사는 당국이 푸드코트와 커피숍의 문을 닫고 슈퍼마켓 운영을 일주일에 이틀로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을 페이스북 그룹에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2020년 5월 「공공질서 및 소란법」에 따른 유죄 판결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표 2-33>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규제 주요 논의 현황

| 연도 | 내용 |
|---------|---------------------------------------|
| 2018.09 | 정부 주도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작성 |
| 2019.06 |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POFMA)」 대통령 승인 |
| 2019.10 |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POFMA)」 법안 효력 |
| 2023.07 | 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개발기관(IMDA) 온라인 안전코드 규정 발효 |

다. 대응 사례

동 법이 발효된 2019년 10월 이후 인민행동당 정부는 2019년에만 네 차례 이상 이에 의거하여 제재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공교롭게도 그 대상으로 야당 관련 게시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안 기반 첫 처벌 집행으로 야당인 진보 싱가포르당(PSP, Progress Singapore Party)의 간부 브래드 보이어(Brad Bowyer)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 투자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재무부에서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일축하며 11월 25일 정정명령을 내린 사건을 들 수 있다.⁶¹⁾ 이후 해당 게시물에는 ‘허위(False)’라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에 대해 유포죄를

선고받았다. 이후로도 싱가포르의 16개 부처 대부분의 부처가 이 법을 발동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잘못된 정보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싱가포르 국민 10명 중 6명이 소셜 미디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아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을 통해 해당 허위정보 사례를 수정하기 위해 게시물 정정 공지 및 시정명령 등을 진행했다. 통신정보부 수석장관에 따르면 2022년 3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의 거의 60%가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에 기록되면서 이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은 허위와 사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가 조기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고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2023년에도 국방부가 관리하는 페이스북과 협력해서 선거 관련 가짜콘텐츠 454건을 적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순찰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갈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하는 등 싱가포르의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있어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허위 및 조작 방지법(Pofma)에 대한 정부의 방어는 ‘공익’에 해를 끼치는 허위사실에 대응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제 외에도 싱가포르는 대중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의 노력을 인용하면서 공교육을 통해 가짜뉴스에도 대처하고 있다.

4. 말레이시아

가. 개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비교적 우수한 인터넷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화 지수가 높은 편⁶²⁾에 속한다.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창구가 다양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말레이시아는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와 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모두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나. 제도

1) 가짜뉴스 방지법안(Anti-Fake News Act 2018)

2018년 3월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내용 혹은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 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징역 최대 10년 혹은 1억 4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거나 둘 다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었다. 이후 2018년 4월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초로 ‘가짜뉴스 방지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표 2-34> ‘가짜뉴스 방지법’ 형량 범위

| 유형 | 형량범위 |
|--------------|-------------------------------|
|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 6년 징역형 혹은 50만 링깃(약 1억 3천만 원)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SGD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

이는 말레이시아 총선을 앞두고 최종 통과되었는데 최초의 법안 취지와는 다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당시 나집 라작 총리가 국부펀드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에서 수조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가 ‘가짜뉴스 방지법’을 근거로 ‘정부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정의하며 권력형 스캔들과 관련된 보도를 막았기 때문이다.⁶³⁾

62) 인터넷 속도 세계 40위, 디지털 도입 지수 세계 41위, 인터넷 접근성 가구 기준 90.1%, 핸드폰 보유 135.4%, 스마트폰 보급률 93.1%, 모바일 뱅킹 이용 인구 66%(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또한 ‘누군가 내 전세기에 의도적으로 결함을 냈다’라고 주장한 한 야권후보에 대해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적용하는 등 야권세력을 탄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이후 5월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이 법은 의회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2019년 10월 말레이시아 하원이 ‘가짜뉴스 방지 관련 법’ 폐지 안건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폐지되었다.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의 최초 취지와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되었다.

2) 가짜뉴스 관련 ‘비상법’(Emergency Ordinance, 2021년)

2021년 3월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최장 징역 3년형을 처벌할 수 있는 비상법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비상사태 기간에 나온 ‘비상법(Emergency Ordinance)’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이 발효된다.

<표 2-35> ‘가짜뉴스 비상법’ 형량 범위

| 유형 | 형량범위 |
|----------------------------------|------------------------------|
| 코로나19 사태나 비상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 3년 징역형 혹은 10만 링깃(약 2,753만 원) |
| 가짜뉴스 발행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 최고 50만 링깃(약 1억 3천만 원) |

해당 법은 말레이시아 내외국인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말레이시아 의회가 폐지한 ‘가짜뉴스 방지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63) 나집 라작 총리는 총선 패배 이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2년 8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다. 사례 및 대응현황

‘가짜뉴스 방지법안’에 의거해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당시 46세였던 덴마크인 살라 살렘 살레 술라이만(Salah Salem Saleh Sulaiman)은 2018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사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출동 시간이 사건 발생 후 50분 가까이 걸렸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출동 시간이 8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그를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했다. 4월 30일 쿠알라룸푸르 법원은 술라이만의 행위가 가짜뉴스 처벌법 위반이라며 벌금 1만 링깃(약 273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⁶⁴⁾

최근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⁶⁵⁾는 ‘통신 멀티미디어법(CMA 1998)⁶⁶⁾’에 따라 극단적 이념표현, 급진적 선동 등의 콘텐츠를 공유한 혐의가 인정되면 5만 링깃(약 4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며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성명문을 발표⁶⁷⁾했다. 이어 2023년 9월 MCMC는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현지 언론사 간의 수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당한 보상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고 부적절한 콘텐츠 유포를 방지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를 비롯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MCMC는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 법무장관실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뉴미디어

64) 관련 보도자료(검색일: 2024년 1월 11일 기준)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pr/30/first-person-convicted-under-malysias-fake-news-law>

65)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66) 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 of 1998

67) 2023년 7월

플랫폼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관리하기 위해 기관 간 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 3 장 국제기구 동향

제 1 절 UN

1. 정책 및 제도

UN은 오보는 부정확한 정보를 실수로 퍼뜨리는 것을 말하지만, 허위 정보(disinformation)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속일 의도가 있으며 심각한 해를 끼치기 위해 퍼뜨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허위 정보는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유포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인권에 영향을 미쳐 공공 정책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키거나 비상사태나 무력 충돌 시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UN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법제화보다는 가짜뉴스와 오남용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나 자율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허위정보대응⁶⁸⁾’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6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각국이 온라인상의 증오와 거짓의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글로벌 피해’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생성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경고가 온라인 혐오 발언과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브리프에서는 그는 ‘사용자가 공유하는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UN의 보고서가 정보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안내하는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68) <https://www.un.org/en/countering-disinformation>

소셜 미디어 채널, 검색 엔진, 메시징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사용자만 약 30억 명에 달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부터 인종 정의와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운동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까지 많은 이점을 가져다줬다고 UN은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 과학을 전복하고 허위정보와 증오를 퍼뜨리며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며 공중 보건과 기후 행동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전통 미디어는 분쟁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뉴스의 원천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에서 퍼지는 증오도 폭력을 촉발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일부 디지털 플랫폼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분쟁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이 폭력과 증오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적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차단 및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모두 세계협약 제19조에 규정된 대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권에 뿌리를 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 국제협력 활동: UN 인증 캠페인(United Nations Verified campaign)⁶⁹⁾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부가 주도하는 UN인증 캠페인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69) <https://shareverified.com/about/>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정보의 출판을 장려하는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관련한 동영상(میم부터 뮤직비디오에 이르기까지)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약 10,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60개 이상의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를 통해 검증된 메시지를 홍보하고 공유하며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거나 확산하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

3. 사례 및 대응현황

UN은 허위정보가 명예훼손, 사기, 허위 광고, 위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비교할 수 없는 양의 콘텐츠가 전파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권,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2023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보호 장치를 제시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무결성을 위한 행동강령을 통해 글로벌 행동의 틀을 제시했다.

<표 3-1> UN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무결성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 구분 | 주요 내용 |
|----------|---|
| 인권 존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및 증오심 표현에 대한 대응이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해야 함 • 정당한 견해나 의견의 표현을 차단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 수행 |
| 독립미디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과 독립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자유롭고 실행 가능하며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 보장 • 현지 언어로 된 독립적인 사실 확인 조직 설립, 자금 지원 및 교육 지원 • 정확하고 윤리적인 독립적 보도 보장 |

| 구분 | 주요 내용 |
|-----------------|--|
| 투명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고리즘, 데이터, 콘텐츠 조정 및 광고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투명성 보장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및 증오심 표현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책 게시 및 홍보 서비스 및 효율성에 대한 조정된 허위 정보 확산 보고 뉴스 미디어는 자금 출처와 광고 정책 등을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할 때 편집 내용과 유료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 사용자 권한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부 정보,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공익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을 보장해야 함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콘텐츠와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대한 투자 |
| 연구 및 데이터 접근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연구와 자원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연구자들에게 제한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제시 (예) 접근방식 변화: ‘요청에 의한 액세스’ → ‘기본적으로 공개’ 특히 소외된 상황과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증오심 표현의 확산과 영향에 대한 독립적 연구에 투자하고 지원해야 함 |

출처: UN 보고서(2023), <Information Integrity on Digital Platforms> 재구성

사무총장은 행동강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고 사항도 제시했는데 정부, 기술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어떤 목적으로든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사용, 지지 또는 증폭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언론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면서 자유롭고 실행가능하며,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모든 AI 애플리케이션이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인권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광고주와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나 혐오 발언 옆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광고가 홍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UN에서는 2022년 허위정보에 대한 위협성을 인지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한 허위정보 대응보고서(Countering disinforma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가 발표되었다. 허위정보의 확산은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선거와 공무 참여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허위정보와 관련해 국가와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치 행위를 담아내고 있다.

첫째,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 접근 방식이다. 플랫폼 회사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치광고의 투명성 보장, 사실 확인 기관과의 협력, 연구자의 접근 확대 등이 포함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온라인 투명성 강화법(Bolstering Onlin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인공지능 봇 또는 이를 제어하는 사람이 고객 등 개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인공적 정체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의 위험을 완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기관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규제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력한 공공 체계와 폭넓은 정보 접근성 촉진이다. UN총회에서는 ‘사실에 입각해 시의적절하고 명확하며 접근 가능한 증거 기반 정보의 보급’을 강조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허위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기관, 거버넌스 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건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치인, 공무원 등이 국민과 자주 소통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관을 구축하며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허위정보 취약성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는 팬데믹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코로나19 당시 허위정보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주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형식을 통해 공중 보건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캠페인을 통해 백신 접종, 마스크 사용 등 위기 상황과 권장 사항을 여러 언어로 대중들에게 제공했고 웹페이지를 통해 보고해 대중에게 허위정보의 위험을 인식하게 한 점이 있다.

셋째,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 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대화이다. 언론인, 학계, 시민사회 모두 허위정보에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대중이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독립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들은 토론하며 허위정보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 미디어, 언론인, 비판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유언비어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공익적이며 다양하고 적절한 자원을 갖춘 미디어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미디어, 정보활용 능력 제고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 생태계에서 허위정보를 해결하는 데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식별해 제거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려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멕시코의 공영방송 시스템(Public Broadcasting System)은 UN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인포데미아(Infodemia)’라는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사용자에게 소셜 네트워크 사용을 이해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위험을 식별 및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폴란드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현대 폴란드 재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콜롬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와 디지털 네트워크 작동 방식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괴롭힘과 폭력을 예방하는 ‘En TIC Confio+’ 및 ‘Con Sentidos TIC’ 프로그램에 지난 10년 간 콜롬비아 국민 중 1,3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이 접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스트리아 공과대학(Austr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인공지능 도구 ‘defalsif-AI’를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인터넷상의 텍스트,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동기가 있는 허위 정보의 맥락에서 허위 정보, 딥페이크 및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표현하고 논쟁을 펼치며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기에 정부,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유럽연합은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유럽의 허위정보 캠페인을 확인 및 분석하고 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는 인권 규범에 따라 허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기업, 학계, 연구자 등을 종합해 허위정보방지 정책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고했다.

제 2 절 OECD

1. 정책 연구

OECD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통해 정부의 정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OECD, 2021B). 연구 결과, 허위정보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팀(예. 출처 조사, 증거 확인, 다른 보도/기사 검색, 선정적 기사 제목에 유의, 비정상적인 기사 형식 주의)은 가짜 뉴스의 공유 의도 감소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팀 등을 제공하여 시민의 정보 탐색 및 판단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Top-down 방식이 아닌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국경 없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 청소년의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인식 수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2021년, 2022년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15세 청소년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연구한 2021년 연구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 학생 중 평균 54%가 학교에서 정보의 편향성을 판별하는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호주, 캐나다, 덴마크, 미국의 경우 70%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1A). 허위정보 및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아동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사 교육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OECD, 2022).

2. 국제협력 활동: Dis/Mis Resource Hub

OECD에서는 ‘허위조작정보’와 ‘허위정보’의 예방 및 적절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핀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정부, 학계, 비정부 대표들이 모여 허위정보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정보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도 했다. Dis/Mis Resource Hub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 회의와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한 국제 공조를 모색해 왔다.

<표 3-2> OECD 허위정보 관련 프레임워크

| 구분 | 주요 내용 |
|--------------------------|--|
| 투명하고 건강한 정보 공간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언론 지원 • 책임 있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정책 설계 • 경쟁 및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경제 및 구조적 인센티브 강화 |
| 사회적 회복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된 참여, 이해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 추구 • 미디어 및 정보 소양, 공공 의사 소통을 통한 기술 및 인식 투자 • 연구가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하도록 보장 |
| 책임있고 신속한 정책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전체의 조정, 전략적 프레임워크 및 국제 협력 확립 • 공공 부문의 기술 및 능력 강화 • 민첩하고 적절한 규제 정책 추구 |

출처: OECD⁷⁰⁾

70) <https://www.oecd.org/gov/oecd-expert-group-on-mis-and-disinformation/>

3. 사례 및 대응현황

OECD는 2023년 4월 20일 여러 국가의 사례에 기반하여 작업반 운영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공공영역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부 기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잘못된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는 위협으로 존재하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표 3-3> 공공 커뮤니케이션 9대 원칙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정책, 표준, 지침 등을 바탕으로 일관된 개입방식을 보여야 함 인적·재정적 자원 투입 등의 범정부적 접근의 필요성 강조 전문화를 통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처 역량 제고 |
| 공익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 및 역정보 대응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익을 지향하여 수행되어야 함 정보 제공자 및 작성자 명시 공정성, 책임성, 객관성 보장을 위한 조치 필요 강조 |
| 미래 대응 및 전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기술과 정보 생태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필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필요 |
|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률 및 규정 내에서 정보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데이터 공개 등의 정직하고 투명한 소통 노력 필요 가정된 내용 및 불확실성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루머와 허위사실 개입 여지 축소 공개된 정보와 정부데이터에 대해 대중이 감시자의 역할 수행 |
| 시의적절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짜뉴스 유통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대응 가능한 메커니즘 개발 필요 |

| 구분 | 주요 내용 |
|--------|--|
| 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머, 거짓, 음모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 필요 강조 •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무제가 있는 콘텐츠의 출처를 식별 및 모니터링 • 정보 및 데이터 격차 줄이기, ‘Pre-bunking⁷¹⁾’ 등의 조치 필요 |
| 증거 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소통은 신뢰 가능한 데이터, 실험결과, 그리고 청중 및 행동 정보에 기반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 연구 및 분석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반영 • 소통과 대응 맥락 이해를 위해 새로운 내러티브, 행동,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 포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 집단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함 • 문화·언어적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적 소외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됨으로써 허위 정보의 확산 방지 가능 |
| 사회적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사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개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접근 필요 •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신뢰 구축을 위해 비정부 파트너와의 협력에 참여해야 함 |

71) 사전방지라는 의미로, 허위정보가 퍼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

제 3 절 UNESCO

1. 개념

유네스코의 표현 및 미디어 개발의 이사인 가이 버거(Guy Berger)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함에 따라 유네스코도 '가짜뉴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유네스코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담당 사무총장보(ADG)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도 '가짜뉴스'를 용어상 모순으로 분석했다며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뉴스를 훼손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가짜뉴스'에 관한 많은 담론들을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⁷²⁾하고 있다. '허위정보'란 사실은 아니지만 유포하는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는 정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일 뿐 아니라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는 정보다. 즉 '허위조작정보'는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만들어 낸 거짓말이며, 악의를 가진 행위자는 이를 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공략한다. 또 다른 범주로 실재를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사람, 조직, 혹은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 '유해정보(mal-information)'를 설명한다. 이것은 진실 메시지와 허위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실 메시지이지만 공익에 봉사하기보다는 해악을 끼칠 의도를 가진 행위자가 고안 및 생산, 배포하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는 비슷하거나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유해정보 및 뉴스에도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1)풍자와 패러디(Satire and Parody), 2)거짓 연결(False Connection),

72)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2018)에서 발췌.

3)호도하는 콘텐츠(Misleading Content), 4)거짓 맥락(False Context), 5)사기성 콘텐츠(Imposter Content), 6)조작된 콘텐츠(Manipulated Content), 7)날조된 콘텐츠(Fabricated Content) 로 총 일곱 가지 커뮤니케이션 속의 내러티브 형식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2. 국제협력 활동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국제 및 지역 기준에 따라 사법 행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는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에 맞서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하고자 정부, 시민사회, 플랫폼 자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조치 및 존중을 위한 원칙을 세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행동 중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의 리더들과 함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개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들과 대응 안내서 발간, 캠페인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3. 제도 및 대응현황

2020년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 날을 맞아 유네스코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자유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과 협력하여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언론인들은 독자들에게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신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보도의 대부분은 위기의 현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예상할 수 있는 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초점을 맞췄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없이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허위정보는 국가 기관과 언론매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고 이미 취약한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중 보건 결과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민주주의 및 인권 발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유네스코는 허위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대응을 지원해 왔다.

유네스코는 또한 언론인에게 보건 위기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검증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같은 맥락으로 유네스코는 2018년 6월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저널리즘 교육 및 훈련 핸드북>을 발간⁷³⁾했다.

일반적으로 사회, 특히 저널리즘이 직면하고 있는 허위정보라는 전 세계적 문제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전문가의 통찰력과 조언을 바탕으로 언론인들이 ‘정보장애’라는 재앙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널리즘 방법과 관행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총 7개 장에서는 정보의 신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실행 모듈을 통해 저널리즘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기술과 소셜 플랫폼이 정보 장애의 통로가 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미디어와 정보 활용 능력을 통해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허위 정보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다. 광대역 위원회(Broadband Commission)와 유네스코는 2020년 9월 <균형법: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존중에 대한 우려 없이 허위정보를 다룰 수 없다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허위 정보의 식별 및 조사 대응부터 정책 및 입법 조치, 기술적 단계, 교육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의 11가지 다양한 범주로 부문별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과 허위 정보 대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23가지 프레임워크를 갖추어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최근 2023년 11월 감비아에서 제3회 Youth Connect⁷⁴⁾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73) <https://en.unesco.org/fightfakenews>

참가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의와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참여한 학자인 **Osrain Kargbo**는 “젊은이로서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여 이들을 식별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받은 정보를 전파하기 전에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감비아 언론 연합(**Gambia Press Union**)의 이사토우 케이타(**Isatou Keita**) 부회장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언론인의 임무입니다. 언론계에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어 그들에게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교육과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제공하여 이들이 정보 확산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으며, 감비아 출신의 **Fanta Sanneh**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하여 책임 공간 내에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는 데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유했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에 맞서기 위해 미디어 및 정보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읽고 쓰는 능력과 정부로부터 검증 가능한 정보를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법에 대해 제공하는 등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4) <https://www.unesco.org/en/articles/media-information-literacy-avenue-youth-combat-hate-speech-misinformation-disinformation>

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 주요 국가별 가짜뉴스의 대응 현황 및 제도 비교

OECD 주요국에서는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별 가짜뉴스 규제 현황을 법·제도, 조직별로 구분하고 규제 방식, 주체, 대상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 주요 국가별 가짜뉴스 규제 현황

| 구분 | | 규제 방식 | 규제 주체 | 규제 대상 | 기타 | |
|----|------|--|----------------------------------|---------------------|-------------------------------------|---|
| EU | 법·제도 | 허위조작정보 대응 행동계획 (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자율규제 | 자율규제 ⁷⁵⁾ | 관련 행동강령에 서명한 자 ⁷⁶⁾ | 다양한 의무사항 ⁷⁷⁾ 을 규정 |
| | 법·제도 | 디지털서비스법 (DSA) 제도 | 자율규제 · 직접규제 ⁷⁸⁾ | 집행 위원회 | 사업자 | 사업자 규모 ⁷⁹⁾ 에 따른 의무사항을 구분 |
| | 법·제도 | 디지털시장법 | 자율규제 | 집행 위원회 | 대형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
| 독일 | 법·제도 | 네트워크집행법 | 정부규제 | 과기부 | 소셜 ⁸⁰⁾ 네트워크 사업자 | |

| 구분 | | 규제 방식 | 규제 주체 | 규제 대상 | 기타 | |
|------|----------|------------------------------|----------|--|------------------------------------|---|
| 프랑스 | 법·제도 | 정보조작 방지법 | 정부규제 | 시청각 최고위원회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선거운동의 투명성/공정 성을 위한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조항 |
| | 민간 기관 | 데팩토 (De Facto) | 자율규제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팩트체크 (fact-check) 시스템 |
| | 기관 | 비지넘 (VIGINUM) | 민간위탁 | 국방 및 국가 안보 사무국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선거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대비기관 |
| 영국 | 법·제도 | 온라인안전법 | 자율규제 | 오프콤 (Ofcom)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 부여 |
| | 기관 | 영국언론표준기구 (IPSO) | 민간위탁 | 가이드라인 (Editor's Code of Practice) | 라디오 텔레비전, 지상파 언론매체, 신문 | 비영리 팩트체크 기관을 활용 |
| 이탈리아 | 법·제도 | 온라인신고포털 | 자율규제 | Polizia Postal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및 이용자 | 온라인 팩트체크 후 위반시 전달 |
| | 기관 | 외무부 공공 및 문화외교담당국 신설 | 정부규제 | 외무부 | 사업자, 이용자 | EU와 협의하여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 대응 |

| 구분 | | 규제 방식 | 규제 주체 | 규제 대상 | 기타 | |
|-----|------|--------------------|------------|----------------|---------------------|------------------------------|
| 미국 | 법·제도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 소송 및 법적 조치 | 개인, 기업 | 가짜뉴스 유포자 및 관련 언론사 | 사회적 법의 보호 및 피해 최소화 목적 |
| | 법·제도 | 방송심의 및 규제 | 자율규제 | 소셜 미디어 사업자 |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 - |
| | 기구 | 연방방송통신 위원회 (FCC) | 방송규제 | 정부 | 방송 사업자 | 내용 규제 미 실시 |
| | 민간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규제 | 자율규제 | 소셜 미디어 사업자 | 소셜 미디어 사업자 | 100% 자율규제 |
| 브라질 | 법·제도 | 가짜뉴스법안 (2630/2020) | 자율규제 | -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법안 시행 논의중 |
| 일본 | 법·제도 |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 법적규제 | 일본 정부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 |
| | 기구 | 플랫폼 서비스 연구회 | 자율규제 | 총무성 |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 민간부문의 자율적 대응 권장 |
| 호주 | 기관 | 플랫폼 행동강령 | 자율규제 | 통신 미디어청 (ACMA)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플랫폼 자발적규제 → 통신미디어청 규제 역할이 강화 |
| | 기관 | 온라인 안전법 | 자율규제 | 온라인 안전국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위해한 콘텐츠 | 신고시스템 미이행시 민사처벌 |

| 구분 | | 규제 방식 | 규제 주체 | 규제 대상 | 기타 | |
|------|-------|------------------------|---------------|-----------------|-------------------|----------------------------|
| | 민관 기관 | 허위 정보 및 허위 정보에 관한 실천강령 | 자율규제 | 디지털 산업 그룹 |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 주경쟁 소비자 위원회 관리 |
| 싱가포르 | 법·제도 |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 | 법적규제 | 법무부 | 개인/ 온라인 플랫폼 /IT업체 | 정기적 관리보고 의무가 있으며, 징역형까지 가능 |
| | 기관 | 온라인 안전 코드 | 자율규제 직접규제 81) | 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개발기관 | 소셜 미디어 사업자 | 당국에 유해 콘텐츠 삭제를 강제 요청 목표 |

주: 각 국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 75) 사업자 자율규제이지만, 실천계획(행동강령 포함) 및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식 발표
- 76) 주요 온라인 플랫폼, 신홍 및 전문 플랫폼, 광고 산업 종사자, 사실 확인 기관, 연구기관 및 시민 사회 조직 등이 포함
- 77) 행동강령에 서명한 자는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정치광고 투명성 보장, 사용자 권한 부여, 사실 확인 기관과의 협력 강화, 연구자에게 데이터 제공 등의 의무
- 78) EU 회원국 내의 자율규제가 원칙이나, 2023년 4월 EU연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형플랫폼에 대해서는 EU가 직접적인 감독 및 규제
- 79) 중개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등의 순으로 의무 추가. 각 사업자별 의무사항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본문 p16-17에 기재
- 80) 규제대상인 소셜네트워크 사업자는 200만 이상 등록된 이용자를 확보한 사업자에 한정
- 81)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율규제의 형식과 당국에 유해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고 미성년자 사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접규제의 방식 혼용

2. 해외의 가짜뉴스 관리 조직 현황

EU나 UNESCO는 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온라인 허위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및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위기에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는 2018년부터 온라인 허위 정보의 확산을 줄이고자 허위 정보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자발적인 공동 규제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EU의 유럽 대외 행동 서비스(EEAS)는 가짜뉴스를 관리 및 대응하는 산하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ERGA) 및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 EDMO)와 함께 보급률, 출처, 대상, 허위 정보의 수익 창출 중단, 협업, 사실 확인 및 강령 구현에 대한 투자 등 6가지 영역을 포괄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온라인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인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다. 두 법 모두 유럽연합 위원회가 유일한 집행자로서, 경쟁총국(DG COMP)과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DG CONNECT)의 공동 팀이 구현 및 시행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다.

UNESCO는 교육, 과학 및 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각국의 전문가, 지식인, 실무자 등과 함께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인들을 위한 유네스코 핸드북> 발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 유네스코가 저널리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국의 인프라를 통해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포럼 등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브라질, 호주 모두 별도의 규제법을 제정하여 각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정부의 산하기관 또는 신문·언론·미디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 EU의 대외관계청(EEAS)과 집행위원회

EU의 대외관계청(EEAS)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대표로 EU 국가와 함께 국가 및 EU 자원을 사용하여 EU 대외 및 보완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가짜뉴스를 관리 및 대응하는 산하 조직인 유럽연합 외교 기관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유럽인의 평화, 번영, 안보 및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EU의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5년부터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생산 및 유포를 적극반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EEAS)에서는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해외 정보조작 및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의 태스크포스(동부, 서부 발칸 반도, 남부)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인근지역을 포괄하고 해외의 허위정보 조작 및 간섭(FIMI)을 처리하는 일을 하며, EU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표 4-2> EU의 대외관계청(EEAS)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

| 구분 | 내용 |
|------|---|
| 설립일 | 2015년 3월 |
| 설립목적 | - EU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쟁과 같은 위협, 데이터 분석, 정책 개발 및 국제적 협력 - 유럽연합의 정책을 설명 및 홍보하고 허위 정보를 식별 및 폭로하며 지역의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됨 |
| 관련법 |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 계획(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2018) |
| 현황 | - 태스크포스(동부, 서부 발칸 반도, 남부) 3곳과 EU 기관, EU 대표단, 회원국 및 EU 내, 이웃 국가 및 그 외 지역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 |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내 유해 콘텐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유럽연합 위원회가 유일한 집행자로서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하여 모든 EU 국가에서는

각 회원국이 지정하여 독립기관으로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표 4-3> EU의 디지털서비스법 및 디지털 시장법

| 구분 | 디지털 서비스법(DSA) | 디지털 시장법(DMA) |
|------|--|---|
| 시행일 | 2022년 11월 16일 시행 | 2022년 11월 1일 발효 2023년 5월 2일 시행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이나 SNS, 검색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이트키퍼 역할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 일정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내는 특정 기업들 대상 빅테크 기업의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 |
| 참여국가 | EU가입국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내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돼 규제 구글, 아마존,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 핀터레스트, 알리익스프레스 등 19개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은 EU 내에서 최근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10조6692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6조원) 이상인 기업 중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MAU)가 4500만명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게이트키퍼 기업들의 개별 서비스 역시 규제대상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무, 광고 및 데이터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관계당국 보고 의무도 포함 가격이 싼 것처럼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동 재구매(재구독) 행위, 서비스 가입보다 해지가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 행위도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이트키퍼 기업은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 |

| 구분 | 디지털 서비스법(DSA) | 디지털 시장법(DMA) |
|--------|---|--|
| 규제 위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초대형 플랫폼 경우, 글로벌 매출액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 •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 심각한 위반 사례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20% 부과 • 반복적으로 위반 시 벌금 지불은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 |

나. 영국의 관련 조직

가짜뉴스를 관리 및 대응하는 행정부처의 산하 조직으로서 영국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DCMS)는 문화와 스포츠 정책과 영국 전역의 일부 미디어(방송과 인터넷 분야)를 담당한다. 중심으로 인터넷 안전관리위원회(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UKCIS), 방송 통신 규제기관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선거 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등이 있다. 여기서 인터넷안전위원회(UKCIS)는 가짜뉴스(허위정보)의 영향이 민주주의의 위험(the risk of democracy)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상의 피해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유해성이 있는 경우를 줄이고, 피해자를 돕고 대응하는 것이 목적인 독립규제 기구이다. 오프콤(Ofcom)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기관으로 규제에 있어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라 아동보호 등을 침해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의 국민 보호하고, 방송법상 규제의 위임 가능성 및 규제체계(독립언론표준기구)의 정립 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독립언론표준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는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리기준 강화 방안(Editor's Code136)은 언론의 편집자 행동강령으로 신문과 잡지에 전반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 정보는 온라인을 통하여 생성·전파되므로 인터넷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위원회(ICO)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과세 및 기금마련 방안으로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전체 소득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서비스과세(digital services tax)제도를 마련하고 형성된 기금으로 허위 정보를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제도도 이뤄지고 있다. 외부기관으로 BBC에서는 사실 검증 탐사보도팀인 ‘BBC Verify’ (BBC검증팀)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검증 전문가와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 신뢰도 높은 뉴스를 만드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표 4-4> 영국의 산하기관

| 구분 | 내용 |
|---------------------------|---|
| 디지털문화 미디어스포츠 (DCM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단행된 개각으로 •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이 문화미디어스포츠부로 바뀜 |
| 인터넷안전 위원회 (UKC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산업계, 민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20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포럼으로 영국 내 온라인 안전을 위한 협력 기구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소규모 사무국 팀이 지원 • 온라인 내 따돌림, 급진주의, 폭력, 혐오 등 인터넷 위해 요소 대응을 중점으로 인터넷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보호 및 대응 지침, 교육 프레임 워크 등 발표 |
| 방송통합 규제기구 (Ofc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2월 29일 공식 출범 • 통합 규제기구인 Ofcom은 다음과 같은 5개 규제기구가 통합된 조직 • 방송 기준 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 방송 내용기준 규제 • 상업 텔레비전 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상업방송 규제 • 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 통신업 규제 •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 : 상업 라디오 규제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운영 |
| 독립언론 표준기구 (IPS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함 • 영국에서 간행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조언과 감시를 맡는 기관 • Editor’s Code는 자체 기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보의 정확성, • 프라이버시, 차별, 기밀정보 등을 포함해 총 17가지 조항에 따라 처리 |

다.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심의회(CSA)와 비지눔(VIGINUM)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심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허위정보의 유포를 통해 국가의 기본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의 영향 아래 통제되는 방송서비스에 '방송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거 기간 외에는 플랫폼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통제는 시청각최고심의회(CSA)에 위임했다. 이 밖에도 국방 및 국가 안보 사무국(SGDSN)에 소속된 비지눔은 국가적 역량을 갖춘 서비스로 2021년 7월 13일에 만들어졌으며, 임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에 프랑스와 프랑스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외국 행위자가 연루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적대적인 콘텐츠가 의심스럽게 전파되는 현상을 탐지하는 것이다.

외부기관으로는 팩트체크 협업 플랫폼, '데팩토(De Facto)'가 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크로스 체크'라는 협업 저널리즘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당시 33개의 언론사를 비롯하여 총 37개의 파트너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초기에는 가짜뉴스의 유통에 관한 연구가 주된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적인 플랫폼을 통해 언론사들이 이러한 현상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데팩토'는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인, 디지털 공론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전문가들의 협업에 대중의 참여를 결합한 플랫폼이라는 데 특별함이 있다. 협업 플랫폼 전문 기업 엑스위키(Xwiki)가 주도하고, 시양스포(Science Po, 파리정치대학), 글로벌 뉴스 보도 에이전시인 AFP, 미디어 교육 전담기구인 클레미(Cleml)가 공동 운영하는 '데팩토'에는 '리베라시옹', '라디오 프랑스', '뱅미뉴트' 등 다양한 프랑스 언론사와, 법학자들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법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리걸 체킹(Legal Checking) 서비스 '쉬르리네르(Surligneurs)'가 합류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기관과 언론사들이 결합할 예정이다.⁸²⁾

<표 4-5> 프랑스의 가짜뉴스 관련 기관

| 구분 | 설립일 | 목적 |
|-------------------|----------------------|--|
| 시청각최고심의회 (CSA) | 2018년 11월 제정 후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 • 선거기간에 국한 • 플랫폼에 대한 규제 |
| 비지눔 (VIGINUM) | 2021년 7월 1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와 관련한 외국 플랫폼 및 콘텐츠 감시 • 가짜뉴스 차단 전담기구 |
| 데팩토 (De Facto) | 2022년 1월 1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짜뉴스 대응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 • 허위정보의 경로, 미치는 영향 제공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제공 |

라. 독일의 연방정부

독일은 정부 주도로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은 독일연방의회의 의결(2017년 6월 30일)을 거쳐, 201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 준수하는 관할 기관은 연방 법무부로 2018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이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은 두 차례의 입법 절차를 거쳤는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면서 2021년 4월 3일 발효되었다. 이때,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심각한 중범죄를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업체는 콘텐츠와 콘텐츠 작성자의 사용가능한 데이터(마지막 로그인 IP 포함)를 연방수사청에 전송해야 하고, 연방수사청은 가해자를 식별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할 지방검찰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미디어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 DDG)이 2023년 12월 연방정부에서 통과되며 2024년 2월 17일 폐기 예정인 네트워크 집행법을 대체하고 독일 내 DSA

82)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시행을 보완하게 된다. DDG에 따르면 연방 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이 중앙기관으로서 독일 내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DSA)을 담당하고 청소년 보호 분야는 연방 아동 청소년 미디어 보호센터 Bundeszentrale für Kinder- und Jugendmedienschutz, BzKJ), 데이터 보호 분야는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위원회(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BfDI)가 맡게 된다.

마. 호주의 통신미디어청(ACMA)

호주는 2023년 6월 개정된 통신법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잘못된 정보·허위 정보의 확산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배포·공유하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통신미디어청(ACMA)은 온라인에서 유해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는다.

<표 4-6> 호주의 통신미디어청(ACMA)

| 구분 | 내용 |
|-----|--|
| 설립일 | 방송과 통신을 관장한 기관이 합병하면서 2005년 7월 설립 |
| 소속 | 방송, 전기통신, 무선통신,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산하 법정 위원회 |
| 역할 | 주된 일은 방송, 전기통신, 무선통신, 인터넷 분야의 산업자율 규약을 장려, 등록(register) 및 제정시키는 것 |
| 관련법 | 호주 방송법·통신법 |
| 현황 | 2023년 6월 25일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및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방지> 초안에 따른 역할 강화 |

| 구분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사의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통신 미디어청이 다음과 같은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 수집 및 기록 △산업 실천강령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관리감독 △실천 강령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형태의 산업 표준을 만들고 시행 |

이 밖에도 호주의 디지털 산업을 개선하며 온라인 안전,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번영하는 호주 디지털 경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비영리 산업 협회인 디지털 산업 그룹 DIGI(Digital Industry Group Inc.)가 있다. 이곳은 실천강령에 서명한 플랫폼들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 제기에 대한 관리와 투명성 보고를 검토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독립적인 민원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모니터링 및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서명한 디지털 플랫폼 사의 불만 처리 운영을 평가하고, 서비스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

제2절 정책 제언

1.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가. 현행법상 가짜뉴스 거버넌스 구조 및 주체별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복합적 과제들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통합된 허위조작정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즉각적,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주 오이시디 대표부, 2022.6.20.)⁸³).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정부 부처들이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등의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별 역할 분배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게 부여된 고유의 역할을 중시 고려해야 한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3조제1항⁸⁴)에 따라 방송과 통신 전반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이다. 소관사무는 동법 제11조제2호에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83) 주 오이시디 대표부 (2022.6.20.). 허위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관한 거버넌스 논의 동향. [Online]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seq=263

8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방통위 소관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방통위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방심위는 동법 제21조에 명시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된 불법정보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정보 등을 심의하고 있다. 방심위는 통신심의를 통해 제재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 및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취급의 거부·정지·제한과 동법 제21조제4호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설치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이라는 행정제재 수단은 불법정보에 한해 적용되며, 그 처분은 동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심위의 요청 후 방통위를 통해 이루어진다⁸⁵⁾.

이처럼 현행법에 따른 관련 규정상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중 거짓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로 규제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규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⁸⁶⁾ 혹은 4호다목⁸⁷⁾에 따른 규율도 가능하다.

8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불응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86)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승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즉, 통신심의를 통해 제재가 필요한 정보로 판단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방통위의 불법정보 처리제한 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 및 피해 당사자의 삭제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방통위와 방심위에 부여된 법적 지위와 역할, 소관사무 성격 등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제 및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구라는 입장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 무엇보다 최근의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보다 SNS, 동영상 공유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유통, 유포되는 경우가 많고,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함에 있어서도 AI와 같은 발전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의 내용과 기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쁨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87)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심각한 사회 불안이나 혼란을 야기하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정연주·홍종윤·박유진, 2021)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문체부 역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⁸⁸)를 설치하고, 동법 제5조⁸⁹)에 따라 허위사실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혹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취지의 동법 개정안은 언론의 형태로 유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가 인터넷뉴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거나 언중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방지가 아닌 사후적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형법」 제307조⁹⁰)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88) 언중위는 언론의 사실보도에 대한 분쟁 조정 및 중재기구로, 언중위로부터 조정신청 접수 건을 통보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조정신청 내용의 알림 표시 의무를 부여하거나 해당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문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언중위에 부여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황용석·정재관·정다운, 2018)

8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 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90)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처벌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91)로 선거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거나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선거 기간이라는 특정 상황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및 고려사항

1) 허위조작정보 정의 규정 관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통위와 방심위가 논란이 되는 허위조작정보를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혹은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정보로 간주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구성요건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로 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통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확립할 수 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시에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정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야 하는데, 유포된 허위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일부 진실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도 허위의 사실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허위조작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정보가 ‘사실’에 대한 주장인 것인지,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인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는데, 수범자 및 집행기관 입장에서 본질적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의견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판단, 입증하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⁹²⁾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사실에 대한 허위 여부 판단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법 해석 또는 집행기관의 통상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저해되어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 시도가 무의미해지거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불명확한 경우 법의 집행

92)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허위사실의 입증가능성과 관련하여 ‘수범자가 무엇이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의 입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입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허위조작정보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권과 같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의견을 제기된바 있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9., 검토보고서).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도 있을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은 국민들이 각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고 군중들이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경우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사회적 의사표현마저 검열, 삭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규율을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7; 2021.2) 역시 현재까지 제안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규정은 추상적이고 의미가 모호하며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구성요건 마련을 통해 유포된 정보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단순히 정보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한다면 이 또한 「헌법」 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⁹³⁾ 이에 허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도 추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위자의 지위, 허위조작정보가 타겟팅한 대상의 상태, 구체적 표현과 전체적 취지, 유포의 계기 및 계속·반복성 여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자의 실제 사정 등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93)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상의 공개시장’이며, 유해한 사상이나 표현도 그 교정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표현’에 있어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표면상 허위의 형식을 떠나 실체는 진실을 드러내는 과장, 풍자, 조롱 등과 같은 표현형식도 존재하며, 과장이나 명백한 왜곡의 경우도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에 부합할 수 있고, 사실의 권력적·조직적 은폐에 따라 객관적 진실이라 믿어지던 것이 후에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의 표현’ 자체를 절대적으로 파악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한다.⁹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로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⁹⁵⁾.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이나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섭되거나 사람의 내심의 의사, 의도를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성이 결정되어 처벌받는 경우 불명확한 기준으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이에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나 사회적 유해성, 현실적 위험성 등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구성요건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을 반드시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 구성원이 공통된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대다수가 어떠한 행위가

94)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내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은 위 금지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 보도의 계기 및 그 계속·반복성 여부, 보도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실제 사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위 조항에서 정한 고의란 행위자가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95)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법범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뿐더러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규율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이상의 논의와 허위조작정보 규율을 시도하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로 정치적,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대중을 기만하고 오도하려는 의도, 허위의 혹은 조작된 정보를 일부러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통 목적이나 의도, 조작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수범자와 행정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 등 하위법령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법률에서 너무 구체화할 경우 사회, 기술, 문화 등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국가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등 일부 구성요건 역시 하위법령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후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게 되면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이자 행정제재 대상이 되어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후 방통위 제재 처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동법 제44조의4(자율규제)가 적용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사회적

책무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개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노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허위조작정보 게재 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6)하거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의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규정(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12)하거나, 방심위 심의 중인 정보에 대한 심의 표시 의무를 부과(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4)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오보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개인의 사후적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법」과 유사하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권리 침해 등 피해를 받은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의 개인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소(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2.4)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표 4-7> 허위조작정보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명 | 발의의원 (발의일) | 규제 내용 (위반시 처벌) |
|-----------------|--|---|
| 정보통신망법 | 박성중 (2023.11) | 허위 내용의 정보를 유포한 자를 처벌(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윤두현 (2023.9)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 |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 김종민 (2022.4)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 결정 권한 부여) 설치 및 온라인분쟁조사관 신설 |
| | 서영교 (2020.1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에서 가짜뉴스가 게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를 발견하거나 삭제 요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영업정지, 폐쇄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정필모 (2020.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에서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 윤영찬 (2020.7) | 거짓사실, 불법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 법명 | 발의의원 (발의일) | 규제 내용 (위반시 처벌) |
|-------|-----------------|---|
| 언론중재법 | 윤영찬 (2021.6) |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안 강화 목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 | 김용민 (2021.6) |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 정정보도 청구 등 사실을 표시하고 정정보도기사는 원 보도와 일치하는 준으로 매개해야 함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음 |
| | 박정 (2021.6) |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켜 개인이나 단체·조직 등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정기간행물(신문, 방송,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훼손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 | 신현영 (2020.7) | 거짓 또는 사생활 침해 내용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기사의 차단을 청구할 수 있음 |
| | 김영호 (2021.5)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목 및 내용에 표시하고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박광온 (2020.8) |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는 해당 언론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해야 함 |
| | 정청래 (2020.8) | 언론사등이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언론사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 | 최강욱 (2021.2) | 언론사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보도를 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부과 |
| | 형법 | 이원욱 (2020.12) |

이와 같이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우려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허위조작정보를 적시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기술발전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자명하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법집행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를 입증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판단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방심위가 논란이 되는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허위조작정보 입증을 위한 별도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럽 DSA의 신뢰 기반 신고자(trusted flagger)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심사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 명확하고 객관적인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기술적 혹은 관리적 조치 적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별도 기구를 설치할 시에는 방통위 혹은 방심위와의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총괄 추진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 기구의 자격과 지위, 역할 그리고 법적 절차와 처분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다만, 방심위나 독립 기구에게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판단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으나, 반면 판단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심위 혹은 독립 기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확산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단체가 직접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허위조작정보 억제를 먼저 유도·지원하고, 자율규제에 의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그렇지 않다면 자율규제를 통해 축적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절차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적인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스스로가 허위조작정보의 존재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센터 운영, 책임자 지정 등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방안, 사후조치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정보의 삭제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정보에 대한 입증 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 등도 고려 가능하다.

2. 국제협력 공조 방안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에 대한 국제협력은 EU, UN,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U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허위정보 대응을 주요과제로 설정하며 이니셔티브 개발, 실행 강령 구축, 지침 개발 등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EU 허위정보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펼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서인 ‘유럽 대외관계청(EEAS)’을 통해 EU 내외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파하고 허위정보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N 인증 캠페인(United Nations Verified campaign)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디지털 공간에서 사실을 전파하고 허위 정보에 대항하여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긴급 상황에서 확인된 정보, 정부 지침, 전문가 의견 등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들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OECD는 전문가 모임인 ‘Expert Group on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을 통해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UN에서도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 허위정보 대응보고서(Countering disinforma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가 발표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가와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과 역할을 소개하고 정부의 규제 노력에 대한 우려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허위정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저널리즘 방법을 소개하는 핸드북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제기구 단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공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짜뉴스의 각 국 대응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22년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호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인권향유·실현에 있어 허위조작정보의 부정적 영향에 맞서는 국가의 역할」(Roles of States in countering the negative impact of disinformation on the enjoyment a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으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결의가 최종 채택되기도 했다. 해당 결의문에는 국가가 팩트체크,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 허위정보,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 방지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가짜뉴스는 공공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분열을 증가시키며, 현실적인 위협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주요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공동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민정 (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가짜뉴스 규제 관련 국내 법안과 해외 대응책에 나타난 용어 및 개념정의 비교.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지현 (2022).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국회도서관.
- 박아란·이나연·오현경 (2020).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희영 (2018). 독일의 가짜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법(NetzDG).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4. 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처 (2012). 행정특별법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송상현 (2020). 가짜뉴스에 대한 규범적 기술적 규제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심나리 (2019). 유럽연합의 허위정보 대응 실행지침. 언론중재위원회.
- 안수길 (2019).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36(1), 121-14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지영 (2023). 허위 정보 확산 막기 위해 통신법 개정안 초안 발표한 호주 정부. 신문과방송, No. 635.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두빈 (2023). 브라질 민주주의의 위기: 팩트체커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1), 3435-3446.
- 임시연 (2019). 싱가포르 2019: 차기 총선과 국민 단합의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30(2), 117-150.
- 전훈·최우정·김재선 (2019). 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 한국법제연구원.
- 정다운 (2021). 독일의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5호 3. 언론중재위원회.

- 정세원·이무성 (2022). EU의 외교적 맥락에서 허위정보 대응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연구: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EU학 연구, 27(2), 41-66.
- 정영주·홍종윤·박유진 (2021).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73-114.
- 정세원 (2022). 유럽연합의 디지털 미래전략으로서 허위정보 대응. 디지털사회 제39호. 디지털사회과학센터.
- 조영주 (2021).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 논의동향 및 제도연구. 국회훈련감사연구논문집(III).
- 최민재·진민정·이현우 (2023).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정책.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지선 (2021). 프랑스의 선거 관련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대응 방안: 법률적 규제를 중심으로,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5호.
- 황수영 (2021). 영국의 선거보도 및 소셜 미디어 규제 현황.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5호.
- 황용석·정재관·정다운 (2018).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험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권 2호, 101-123.

국외문헌

- ACCC (2019), Digital Platforms Inquiry final report. www.accc.gov.au.
- Australian Government (2023),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Combating Misinformation andDisinformation) Bill 2023 Guidance Note.
- AHRC (2023), Finding balance: combatting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without threatening free expression.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 Articoli (2022), Public Agents in social media regulation: The Brazilian cas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Law, Market&Innovation.
- Baker, Jalelah Abu (2019), Google Points to POFMA Code of Practice for Not

Accepting Political Ads Online after SDP Raised Concerns. Channel News Asia Dec 4.

CNA (2019), Highlights: National Day Rally 2019. Channel News Asia Aug 18.

Beduschi, A. (2022), Regulatory Approaches to Online Harms and Human Rights: Three Case Studies. The Geneva Academy.

Deutscher Bundestag (2017), Fake-News Definition und Rechtslage.

Disinfocheck (2023). Regulating Disinformation: Look-up on the legal framework in Luxembourg

ECFR (2023), Democratic defence: How Italy can lead the fight against Russian disinformation, ecfr.eu/publication/democratic-defence-how-italy-can-lead-the-fight-against-russian-disinformation/.

EU (2022), Strengthened Code of Practice Disinformation. European Commission.

EU (2018),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1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Hoboken, J. & Fathaigh, R. (2021). Regulating Disinformation in Europe: Implications for Speech and Privacy, 6 UC Irvin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Law 9. <https://scholarship.law.uci.edu/ucijil/vol6/iss1/3>.

Lai, Linette (2019), Parliament: Vivian Outlines Foreign Policy Challenges Singapore Faces and How It will Overcome Them.

OECD(2021B),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 An international effort using behavioural science to tackle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OECD(2021A), Are 15-year-olds prepared to deal with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OECD(2022), Policy responses to false and misleading digital content-A snapshot of children's media literacy.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3).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Combatting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Bill 2023.

UNESCO (2018),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UN (2022), Countering disinforma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UN(2022), Countering disinforma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eneral Assembly.

UN(2023), Information Integrity on Digital Platforms, Our Common Agenda Policy Brief 8.

온라인 자료

매일경제 (2023. 05. 03.). “브라질 당국-구글, 의회 추진 ‘가짜뉴스금지법안’ 놓고 대립, <https://stock.mk.co.kr/news/view/111847>.

미디어오늘 (2022. 03. 29). “[유럽언론 토크아보기] 가짜 뉴스에 맞서는 프랑스 플랫폼, 데팩토 (De Facto)의 등장”,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75>.

시사인 (2023. 01. 14.), “‘댓글 쓰려면 전화번호 남기세요’ 악플 막을 수 있을까”,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4.

연합뉴스 (2023. 11. 19.), “온상 된 소셜미디어…IT업계 '페이크 감별' 발등의불”, www.yna.co.kr/view/AKR20231103003200091?input=1195m

Assemblée Nationale (2018. 03. 21.), “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fausses informations”, <http://www.assemblee-nationale.fr/15/pdf/propositions/pion0799.pdf>.

Assemblée Nationale (2018. 12. 22.),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s informations”,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lutte_fausses_informations?etape=15-PROM

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es und Verkehr (2023.12.20.), “Bundesregierung verabschiedet Digitale-Dienste-Gesetz”, <https://bmdv.bund.de/SharedDocs/DE/Pressemitteilungen/2>

023/120-wissing-digitale-dienste-gesetz.html.

CBS News (2023. 12. 15.), “Rudy Giuliani ordered to pay \$148 million for false 2020 election claims”, www.cbsnews.com/news/rudy-giuliani-verdict-defamation-trial-georgia-election-workers/.

CMDS (2019), Brave New Hungary: The Anatomy of Fake News on Social Media, cmds.ccu.edu/brave-new-hungary-anatomy-fake-news-social-media.

Council of EU (2023),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nd Energy Council - December 2023, newsroom.consilium.europa.eu/events/20231204-transport-telecommunications-and-energy-council-december-2023/142844-declaration-fr-barrot-20231205.

Ekathimerini (2021. 11. 18.), “Lawyer arrested for spreading Covid misinformation”, www.ekathimerini.com/news/1172069/lawyer-arrested-for-spreading-covid-misinformation/.

EL PAIS (2020. 11. 09.) “Spain to monitor online fake news and give a ‘political response’ to disinformation campaigns”, english.elpais.com/politics/2020-11-09/spain-to-monitor-online-fake-news-and-give-a-political-response-to-disinformation-campaigns.html.

Financial Times (2016), “Italy antitrust chief urges EU to help beat fake news”, www.ft.com/content/e7280576-cddc-11e6-864f-20dcb35cede2.

Government of Canada (2023), Digital Citizen Initiative - Online disinformation and other online harms and threats, 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online-disinformation.html.

Greek Reporter (2021. 04. 12.), “Arrest Warrant Issued For Greek Journalist Accused of Spreading Fake News”, greekreporter.com/2021/04/12/arrest-warrant-issued-for-greek-journalist-spreading-fake-news/.

Heise online (2023. 04. 28), “Plattform-Regulierung: Deutsches Digitale-Dienste-Gesetz soll NetzDG ersetzen”, <https://www.heise.de/news/Plattform-Regulierung-Deutsches-Digitale-Dienste-Gesetz-soll-NetzDG-ersetzen-8982385.html>.

- Human Rights Watch (2021. 11. 17.), “Greece: Alleged ‘Fake News’ Made a Crime”, www.hrw.org/news/2021/11/17/greece-alleged-fake-news-made-crime.
- IPI (2018. 01. 24.), “Finland remains resistant to ‘fake news’, disinformation”, ipi.media/finland-remains-resistant-to-fake-news-disinformation/.
- Malwarebytes Labs (2020. 01. 23.), “Deepfakes laws and proposals flood US”, www.malwarebytes.com/blog/news/2020/01/deepfakes-laws-and-proposals-flood-us.
- Medietilsynet (2021. 09. 07.), The Norwegian Media Authority: Stop, think, check: How to expose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www.medietilsynet.no/english/stop-think-check-en/.
- MIC (2023), インターネット上のフェイクニュースや偽情報への対策, 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d_syohi/ihoyugai_05.html.
- Poynter (2018. 01. 19.), “Italians can now report fake news to the police. Here’s why that’s problematic”, www.poynter.org/fact-checking/2018/italians-can-now-report-fake-news-to-the-police-heres-why-thats-problematic/.
- Resiurc Centre on media freedom in Europe (2018. 05. 21.), “Tackling fake news, the Italian way”, www.rcmediafreedom.eu/Tools/Legal-Resources/Tackling-fake-news-the-Italian-way.
- The New York Times (2023. 01. 10). “How Finland Is Teaching a Generation to Spot Misinformation”, <https://www.nytimes.com/2023/01/10/world/europe/finland-misinformation-classes.html>.
- The Washington Post (2023. 12. 15.), “Rudy Giuliani ordered to pay \$148 million for false 2020 election claims”, www.washingtonpost.com/dc-md-va/2023/12/15/giuliani-defamation-damages-trial-verdict-georgia-election-case/.
- Tik Tok (2023), The truth about TikTok hashtags and content during the Israel-Hamas war, newsroom.tiktok.com/en-us/the-truth-about-tiktok-hashtags-and-content-during-the-israel-hamas-war.
- UNESCO (2018),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en.unesco.org/sites/default/files/journalism_fake_news_disinformation_print_friendly_0.pdf.

YLE (2022. 06. 08.), "Supo: Spreading fake news on behalf of foreign power should be illegal",
yle.fi/a/3-12565990, supo.fi/en/what-suppo-does.

● 저 자 소 개 ●

김용희

- 숭실대 경제학과 졸업
- 숭실대 경영학과 석사
- 숭실대 경영학과 박사
- 현 오픈루트 연구위원

이혜원

-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 중앙대 공연영상학과 석사
- 현 오픈루트 책임연구원

허엽

-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헬싱키경제대 경영학 e-MBA
- 현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

한정훈

- 연세대 대기과학과 졸업
- 전 JTBC 미디어기자
- 현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

박영주

- 숭실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 숭실대 평생교육학 석사
- 숭실대 경영학과 박사수료
- 현 오픈루트 대표

이현주

-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
- 현 오픈루트 선임연구원

양연희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현 바른언론시민행동 차장

윤소민

-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학사
- 성균관대 예술학협동과정 박사수료
- 현 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대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34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31일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